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5호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947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1949 호	남동구 간석3동 내부도로 통행방향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12
○ 공	고 제 1951 호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8
○ 공	고 제 1957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10
○ 공	고 제 1960 호	2020년 10월 취득세 공시송달	114
○ 공	고 제 1962 호	2020년 9월 재산세 공시송달	116
○ 공	고 제 1966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2
○ 공	고 제 1967 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9
○ 공	고 제 1968 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57
○ 공	고 제 1975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70
○ 공	고 제 197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돌산마루2호 공영주차장 외부 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172
○ 공	고 제 1978 호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6
○ 공	고 제 1982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93
○ 공	고 제 1985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22
○ 공	고 제 1986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3

고 시

- 고 시 제 1 5 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260
- 고 시 제 1 5 6 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264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제 1 5 7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소래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317

회
람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47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기반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 친환경도시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0. 10. 05. ~ 10. 26. (21일간)

4. 주요내용

-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 ~ 제3조)
- 분과위원회,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위원의 해촉, 간사와 서기(안 제6조 ~ 제7조)
- 경비의 지원, 회의결과(안 제8조 ~ 제9조)
- 운영세칙(안 제10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02, FAX 453-260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6. 참고자료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및 환경관련 사업을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 ~ 제3조)
- 분과위원회,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위원의 해촉, 간사와 서기(안 제6조 ~ 제7조)
- 경비의 지원, 회의결과(안 제8조 ~ 제9조)
- 운영세칙(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자문
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8.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
9.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환경행정분과위원회와 구민참여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각각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행정분과위원회, 구민참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분과위원회: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이행점검 등
2. 구민참여분과위원회: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보호관련 사업 활동, 환경교육, 환경관련 홍보활동 등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 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항목: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 환경관련 사업비 등
2. 지원방법: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9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생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
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49호

남동구 간석3동 내부도로 통행방향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주택밀집지역의 내부도로 차량소통 능력 및 보행자 안전성 향상,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부도로의 통행방향 지정과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신청 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지 정 명: 남동구 간석3동 내부도로 통행방향 지정
2. 지정목적: 간석3동 주택밀집지역의 내부도로 차량소통 능력 및 보행자 안전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부도로 통행방향을 지정하고자 함
3. 지정구간

위 치	개선(안)	규제내용
간석3동 (경인로, 백범로, 호구포로 내부도로)	[붙임1] 참조	통행지정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공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0. 9. 29. ~ 2020. 10. 19.(20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9. 29. ~ 2020. 10. 19.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붙임2]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032-453-2684 / FAX: 032-453-2889

마.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통행방향지정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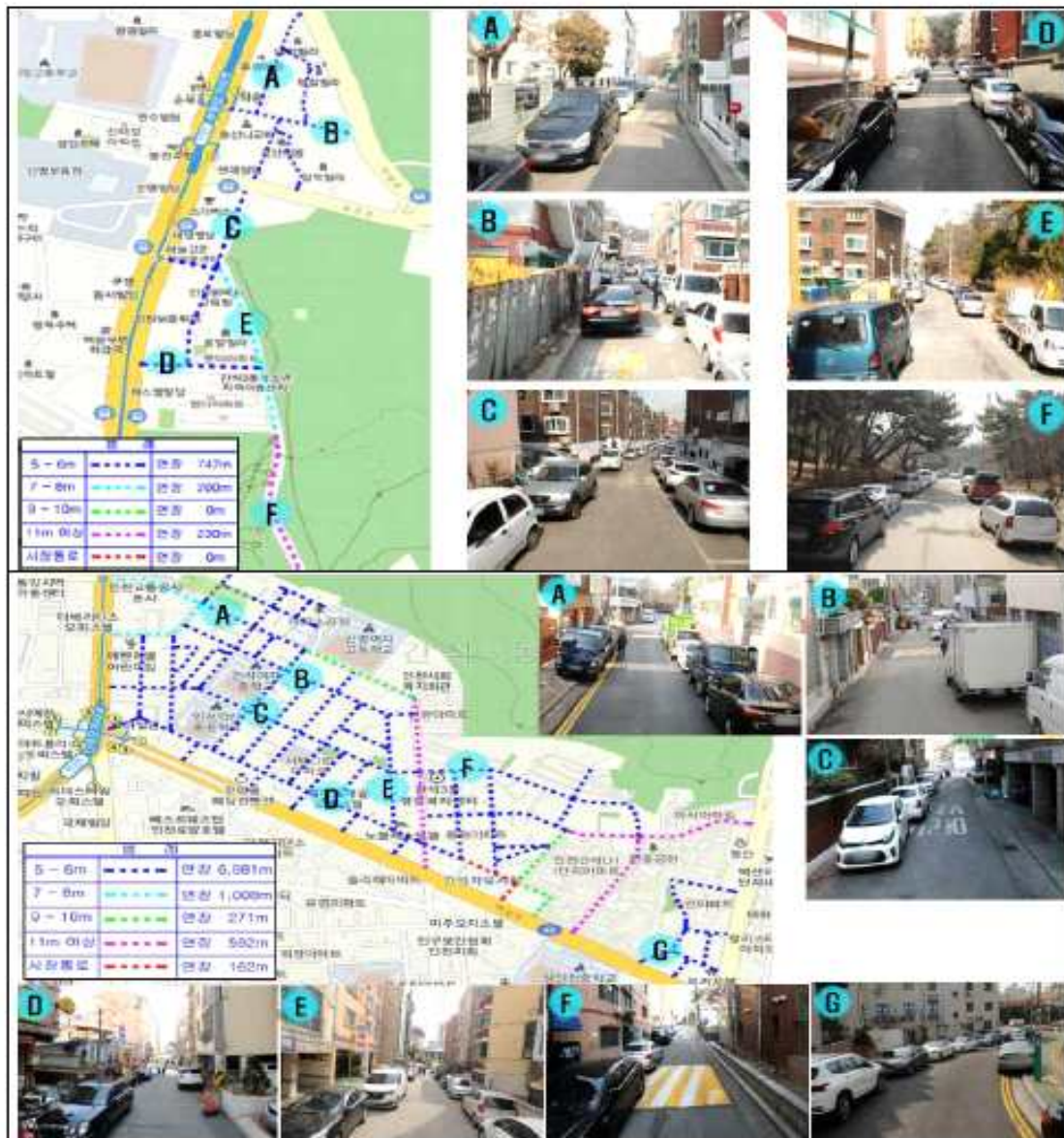
1. 지정구간: 간석3동(경인로, 백범로, 호구포로 내부도로)

2. 도로현황 및 문제점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9m 이하의 이면도로 다수

나.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성행

다. 불법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방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높음



3. 주요개선방안(예시)

가. 일방통행 지정 및 편측 노상주차장 설치



나. 양방통행 및 편측 노상주차장 설치



다. 일방통행 및 편측보행로, 편측 노상주차장 설치



라. 일방통행 및 양측 노상주차장 설치



4. 통행방향 지정 개선(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남동구 간석3동 내부도로 통행방향 지정에 관한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간석3동 내부도로 통행방향 지정에 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51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에 따라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과
2.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전총괄과
3.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4.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업지원과
5.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6.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7.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8.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차매정신건강과
9.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차매정신건강과

2020년 10월 5일

남 동 구 청 장



제 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0. 10. 7.(수) ~ 10. 16.(금)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과)		7
■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안전총괄과)		23
■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1
■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업지원과)		45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57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79
■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99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352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06.09.)에 따라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전출입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통합관리기금」 과 「재정안정화기금」 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의 설치 (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채원과 용도 (안 제3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채원과 용도(안 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 예수·예탁의 이자(안 제8조)
- 존속기한(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남동구 금고(이하 “구 금고”로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기금과 관련된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통합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

금”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56조부터 제66조의2까지를 삭제한다.

②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3조(자금이체)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56조에 따라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56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른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 녕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0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특·광역시는 제29조의2)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출연금(서울·인천·경기)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광역시단체인 경우 해당)
3.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설정 가능)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53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 주민참여 및 지원” 조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안 제3조)
-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안 제5조))
-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안 제7조)
-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

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1항제1호에 해당됨

→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지원에 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은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송 진 호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1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4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정의 및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남동구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현실화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 그 밖에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제1항)
- 마을활동가 명칭 수정(안 제2조, 제10조, 제27조)
-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8조)
-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안 제22조)
-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제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활동가”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을 “주민간”으로, “회복을 지향한다.”를 “회복 지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주민”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를 “다양성 존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마을 만들기는 주민”을 “주민”으로, “통해 추진한다.”를 “통한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마을 만들기는 환경”을 “환경”으로, “지향한다.”를 “지향”으로 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제4조 중 “기여해야”를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8호 중 “마을일꾼”을 “마을활동가”로 한다.

제12조 중 “추진경과”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로, “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를 “허위”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들기”를 “만들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마을 만들기”를 각각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동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되고, 공동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을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으로, “1명을 호선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2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중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마을 만들기 일꾼”을 “마을활동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마을만들기”를 “마을 만들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위탁”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으로 하고, “검사할”을 “검사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견진술”을 “통보하고 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을 “해제 또는 해지 된”으로 한다.

제31조 중 “바에”를 “바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마을활동가</u> ”란 주민이 스스로 <u>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u> <u>마을공동체 활동을 돕는 사람</u> <u>을 말한다.</u>
제3조(기본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u>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u> 2. <u>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u> 3. <u>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u> 4. <u>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u> 5. <u>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u>	제3조(기본원칙) ----- ----- -----. 1. <u>주민간</u> ----- ----- -- <u>회복 지향</u> 2. <u>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u> 3. <u>주민</u> ----- ----- <u>다양성 존중</u> 4. <u>주민</u> ----- ----- <u>통한</u> <u>추진</u> 5. <u>환경</u> ----- ----- <u>지향</u>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10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
9. · 10. (생략)

제12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추진 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 기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

제10조(사업지원) -----

-----.

1. ~ 7. (현행과 같음)
8. 마을활동가 -----
9. · 10. (현행과 같음)

제12조(중간점검) -----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진경과-----

--- 하게 할 -----.

제13조(포상 및 홍보) -----

-----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

제14조(사업비의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인천광역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인정할 -----
-----.

1. ~ 4. (현행과 같음)

5. 허위 -----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

----- 다른 -----

-----.

제16조(준용) -----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만들기에 -----
-----.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 -----

5. 마을공동체 -----

6. (생 략)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생 략)

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3. (생 략)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6.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
--- 부위원장 1명-----
-----.

② -----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
-----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등) -----

----- 연 1회 이상 -----

-----.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간사) -----

----- 부서의 장-----.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설치하여 운영-----
-----.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

한다.

1. ~ 4. (생략)

5. 마을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6. (생략)

7.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
· 연수·박람회·세미나·사
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8.·9. (생략)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
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

---.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활동가 -----

6. (현행과 같음)

7. 마을 만들기 -----

8.·9. (현행과 같음)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

---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 - 수탁기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공무원
법」 제30조의4-----
-----.

⑥ -----

----- 따른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

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
-----검사하게 할-----.

② -----

----- 인정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보하고 의견진술-----.

③ ----- 해제
또는 해지 된 -----

-----.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바를 -----.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55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의 목적 및 설치 위치(안 제1조, 제2조)
- 전시판매장의 사업(안 제3조)
- 전시판매장 운영계획 수립 및 수수료(안 제4조, 제5조)
-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및 협의(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전시판매장 위탁의 취소(안 제9조)
- 전시판매장 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0조, 제11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남동

구 조 례 제 호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소래포구 어시장 2층)에 둔다.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및 특산품(이하 “중소기업제품 등”이라 한다)의 전시·판매
2.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 및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중소기업제품 등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설치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홍보 및 판매 강화를 위한 사항
2. 휴 · 개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3. 판매위탁품의 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4. 위탁판매 계약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전시판매장의 수입과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내용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수수료)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등을 판매위탁 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품 입점금액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 운영)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 단체 ·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 · 운영규정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나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협의)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판매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전시판매장 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
4. 전시판매장 위탁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하는 사항
5.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시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2조(설치 및 위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소래포구 어시장 2층)에 둔다

제6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나. 비용발생 요인 :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경비 : 206,786천원

- (1)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설치를 위한 공사 및 물품구입 비등 초기 투자비 96,000천원과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78,496천원(1인 39,248천원) 및 운영경비 32,290천원이 소요 예상 됨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전시판매장 설치비용(공사 및 물품구입 등)은 당해연도 지출
 (2)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인력(기간제 근로자)의 매월 지급 인건비
 (3) 전시판매장 시설의 공공요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나. 추계 결과

- (1) 2020년에 설치비 96,000천원 편성되어 소래포구 어시장 조성공사 일정에 맞춰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021년 운영관리비 110,786천원이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으로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전시판매장 운영 인건비 및 경비 : 2020~2024년 [단위: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총 사업비(a+b)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증액분(a)	0	0	0	0	0	0
현재 편성액(b)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 광 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일반회계	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세 출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재원 조달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지방교부세	시비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96,000	110,786	110,786	110,786	110,786	539,144
	지방세	96,000	50,786	50,786	50,786	50,786	299,144
	세외수입	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6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 의사결정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시설 (단위:m²/명)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비 고
(가칭)구월지웰 시티푸르지오	남동대로799번길 34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327.14	76	신규위탁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어린이집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행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3,464,991천원(5년간)

□ 동의 사항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0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 (5년)
- 발생비용 : 3,464,991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3,028,727천원, 구비436,264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75,875	590,369	605,297	620,674	636,512	3,028,727
	국시비보조금	575,875	590,369	605,297	620,674	636,512	3,028,727
세 출		659,740	675,878	692,499	709,620	727,254	3,464,99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659,740	675,878	692,499	709,620	727,254	3,464,991
재원 조달		659,740	675,878	692,499	709,620	727,254	3,464,991
의존 재원	소 계	575,875	590,369	605,297	620,674	636,512	3,028,727
	보조금	국비	372,930	383,588	394,566	405,874	1,974,479
		시비	202,945	206,781	210,731	218,991	1,054,24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83,865	85,509	87,202	88,946	90,742	436,264
	구비	83,865	85,509	87,202	88,946	90,742	436,264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0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아동인원 59명, 교직원 13명(영아반10명, 유아반1명)		644,073
보육교직원 인건비		- 원장:3,085,700원×80%×1명×12월 - 교사:2,136,400원×80%×10명×12월 - 교사:2,136,400원×30%×1명×12월 - 조리원:1,815,900원×100%×1명×12월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 47,510천원 (13명 총 인건비 9.65% 적용)	원장 14호봉 교사 6호봉 조리원 2호봉	311,702
어린이 집 환경개 선	교재 교구비	- 611천원×1개소	시설규모별 지원 (60인이하)	611
	냉난방비	- 767천원×1개소		767
	보육장비 비	- 301천원×1개소		301
교사 수당	담임교사 지원비	- 교사:240천원×10명×12월	영아반교사 야간연장	28,800
	누리과정 교사수당	- 교사:360천원×1명×12월	유아반교사	4,320
	처우 개선비	- 영아교사,야간연장:170천원×10명×12월 - 유아교사:90천원×1명×12월 - 원 장310천원×1명×12월	원장 및 교사	25,200
	격려수당	- 교사:80천원×11명×12월	교사	10,560
	원장학습 운영비	- 원장:50천원×1명×12월	원장	600
	교직원 명절수당	- 교사:50천원×11명×2월	교사	1,100
영유아보육료		- 영아(0세) 470천원×6명×12월 - 영아(1세) 414천원×19명×12월 - 영아(2세) 343천원×20명×12월 - 유아(3~5세) 240천원×14명×12월 - 누리과정운영비 55천원×14명×12월	연령별 지원	260,112

[붙임 1]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I 관련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2.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1.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2.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3.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세부추진계획

☐ 위탁대상 현황

(단위:m²/명)

어린이집 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취약보육	비고
(가칭)구월지웰 시티푸르지오	남동대로799번길 34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327.14	76	2개이상	신규위탁

※ 신규 어린이집 정원은 연면적에 의해 산정된 인원이며,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보육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상 보육정원 59명)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법인·단체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공통 : ①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②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

○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단, 고용 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운영자 명의로만 가져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

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야간연장)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
 -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취소 할 수 있음

□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를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붙임3]

- 「2020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름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위탁해지에 따른 변경위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1순위), 원장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IV

추진일정

-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 : 2020. 10월
-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붙임1**
 - 기 간 : 2020. 10월중(20일 이상 공고)
 - 공 고 : 구보,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접 수 처 :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0. 11월중
- ☐ 위탁계약 체결 : 2020. 12월 ~ 2021. 1월중

V

행정사항

-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의뢰 : 2020. 10월
-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 : 2020. 10월중
 - 대변인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붙임1

남동구 공고 제 2020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단위:㎡/명)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정원	취약보육	비 고
(가칭)구월지웰 시티푸르지오	남동대로799번길 34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327.14	76	2개이상	신규위탁

※ 신규 어린이집 정원은 연면적에 의해 산정된 인원이며,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보육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0. 10월 중(20일 이상 공고)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신청인(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붙임2** 의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①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1부, 사본14부)

②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약5분 분량**)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4. 신청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 신청

- 개인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운영자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야간연장)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 「2020 보육사업 안내」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8.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원장의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교직원(대표자, 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15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단,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인 경우 제외)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위탁운영신청자는 1인 1개소만 접수 가능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육정책과(☎453 - 5843)에 문의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별지 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3. 원장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	○	
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5.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및 관련학과)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7.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별지 서식)
8. 법인·단체 소개서	○	○		
9.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제외
10.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1.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12. 2018년~2019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보육관련 사업
13. 2017년~2018년 법인(단체)총괄결산서 2018년~2019년 법인(단체)총괄예산서	○	○		보육관련 사업
1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1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	○	○	(별지 서식)
15. 보육 관련 운영실적 및 포상 등 증빙서류 (신문방송보도,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	○	○	보육관련 사업
16. 재정상태 및 약서	○	○	○	(별지 서식)
17. 건물 : 등기부등본 및 아래의 서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기타 : 세목별과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임대차계약서: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	○	-개인 (기혼자 부 부재산 반영, 배 우자 50% 인정)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서류발급 기준 일 : 공고일 전일 취 득분에 한함 ※ 금융재산,부채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기준발행 ※ 기혼자는 배우 자 포함 제출
18. 토지 :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	○	
19. 금융재산 및 부채(공고일 전일 현재잔액증명)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빙서류(배우자 포함 필수) →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	
20.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원본지참)	○	○	○	
21. 인감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용도: 국공립어린 이집 위탁신청용
2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	○	(별지 서식)
23.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24.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 조회서)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행해야 함.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10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붙임 2]

관련 법령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7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 의사결정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위탁 운영
- 위탁시설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연면적	위탁만료일	비 고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남동구청 별관1층	189.99㎡	2020.12.31.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시설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및 결산, 행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798,348천원(3년간)

☐ 동의 사항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인건비,시설운영비,장난감구입비 등)

나. 관련조문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1년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계획에 따른 소요액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3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3년 (3년)
- 발생비용 : 798,34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399,174천원, 구비399,174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29,145	133,019	137,010	399,174
	시비보조금	129,145	133,019	137,010	399,174
세 출		258,290	266,038	274,020	798,348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	258,290	266,038	274,020	798,348
재원 조달		258,290	266,038	274,020	798,348
의존 재원	소 계	129,145	133,019	137,010	399,174
	보조금 시비	129,145	133,019	137,010	399,17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29,145	133,019	137,010	399,174
	구비	129,145	133,019	137,010	399,174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1년 운영비 소요액)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점장 1명,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단기계약직 1명		258,290
인건비		-점장:2,178,750원×1명×12월 -정규직:2,013,165원×2명×12월 -계약직:8,720원×209시간×3명×12월 -단기계약직:8,720원×105시간×1명×5월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 27,806천원 (7명 총 인건비 18.72%)	점장 (보육교사 5호봉수준) 정규직 (조리원 8호봉수준) 계약직 (2021년 최저시급)	172,455
직원 수당	점장직책 수당	-점장: 150,000원×12월		1,800
	처우개선 비	-점장,정규직: 170,000원×3명×12월		6,120
	계약직 목욕비	-7,500원×20일×3명×12월		5,400
	제수당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 등		2,515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비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구입		20,000
		-기타 운영비(후생경비, 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50,000

[붙임 1]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I 관련근거

1.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1.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운영자 선정
2.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3.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세부추진계획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위탁만료일	비고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 별관1층	189.99m ²	2020.12.31.	

☐ 운영현황 (2020.8월말 기준)

종사자	대여품 보유 수	총회원수	일평균대여수	비고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8,745점	2,734명	117건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법인·단체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보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 공통 : ①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② 도담도담장난감월드안내지침에 기준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 신청

○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시설장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 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운영자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 종사자 보수 : 「도담도담장난감월드안내 지침」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이용료 등)의 활용은 시설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위탁운영자선정 계획서에 따른 심사기준표에 따르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를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기준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심사 기준표 [붙임3]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	30
■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업무경력, 운영 의지 등)	25
■ 위탁체의 장난감대여점 운영계획(사업계획, 평가계획)	3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위탁체의 시설운영 계획(1순위),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IV

추진일정

-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보고 : 2020. 10월
-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붙임1]
 - 기 간 : 2020. 10월중(20일 이상 공고)
 - 공 고 : 구보,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접 수 처 :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0. 11월중
- ☐ 위탁계약 체결 : 2020. 12월중

V

행정사항

-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의뢰 : 2020. 10월
-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게시 : 2020. 10월중
 - 대변인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붙임1

남동구 공고 제 2020 - 호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위탁만료일	비고
남동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남동구청 별관1층	189.99m ²	2020.12.31.	

2. 운영현황 (2020.8월말 기준)

종사자	대여품 보유 수	총회원수	일평균대여수	비고
정규직 2명 계약직 3명	8,745점	2,734명	117건	

3.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4.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0. 10월 중(20일 이상 공고)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신청인(신분증원본 지참)방문접수(※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붙임2]의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 ①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1부, 사본14부)
 - ②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약5분 분량)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조정 가능)
 -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5. 신청 자격 요건

【 법인·단체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에서 보육 및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 공통 : ①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 ② 도담도담장난감월드안내지침에 기준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 신청

【 개인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시설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 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운영자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 종사자 보수 : 「도담도담장난감월드안내 지침」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이용료 등)의 활용은 시설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안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 :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심사 기준표

심 사 항 목	배 점 (총 100점)
■ 위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시설 운영관리, 사업계획 대비 실적 등)	10
■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업무경력, 운영 의지 등)	35
■ 위탁체의 장난감대여점 운영계획(사업계획, 평가계획)	40
■ 재정능력(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붙임3]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심사 기준표 참조

9.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운영자는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위탁체의 시설운영 계획(1순위), 위탁체시설장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1명(법인·단체 포함) 이하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10.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청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보육정책과(☎453 - 5843)에 문의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 신청서	○	○	○	(별지 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3.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	○	
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5.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및 관련학과)	○	○	○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7.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별지 서식)
8. 법인·단체 소개서	○	○		
9.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0.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12. 2018~2019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보육관련 사업
13. 2019년 총괄 예산서 및 결산서, 2020년 총괄예산서	○	○		보육관련 사업
14.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계획서 - 장난감 등 보유물품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 직원 교육(친절교육 등) - 회원관리(신규, 갱신, 탈퇴, 연체) - 2021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	○	○	(별지 서식)
15.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실적(2019년) 및 포상 등 증빙서류(신문방송보도,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공모사업 자원확정 통보서 등)	○	○	○	보육관련 사업
16. 재정상태 및 약약서	○	○	○	-개인 (기혼자 부부재산 반영, 배우자 50% 인정)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서류발급 기준일 :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금융재산, 부채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기준 발행 ※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제출
17. 건물 : 등기부등본 및 아래의 서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과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임대차계약서: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	○	
18. 토지 :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	○	
19. 금융재산 및 부채(공고일 전일 현재잔액증명)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빙서류(배우자 포함 필수) →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	○	
20. 인감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용도: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 신청용
2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	○	(별지 서식)
2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23.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 조회서)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행해야 함.

[붙임3]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2. 위탁체의 시설운영 및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 • 정기적 실내청소 및 소독, 장난감 세척 • 이용자(회원) 관리 및 연체, 배상 처리 • 자원봉사 활용	10
		- 사업계획 대비 실적	• 시설안전관리, 장난감소독 및 세척 • 회원관리 : 신규, 갱신, 탈퇴, 연체 • 장난감 물품관리 • 직원교육 및 연수 •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 시설장의 전문성	25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10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4. 위탁체의 장난감 대여점 운영계획	30	- 사업 및 운영관에 관한 계획	• 장난감, 도서, 영상물 대여사업 • 장난감 등 보유물품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 직원 서비스 교육 • 회원관리 : 신규, 갱신, 탈퇴, 연체	20
		- 평가계획	•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
5. 위탁체의 재정 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붙임 2]

관련 법령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 ①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8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으로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지정시설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정비 (안 제4조제1항제2호)
-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규제사항 등 정비 (안 제4조제1항제5호)
-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 등 정비 (안 제4조제1항제6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제7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을 “지역) 및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6. 주유소

제7조제1항 본문 중 “관리자”를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규정함</u>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u>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u> 3. 4. <u>삭제</u> 5. 구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u>지역</u>) 6. <u>가스충전소 및 주유소</u> 7. 8.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u> (현행과 같음) 5. ----- ----- <u>지역</u>) 및 지하철역 <u>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u> 6. <u>주유소</u> 7.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청장이 지정하는 흡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유자등-----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 일치 및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명시하는 등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 은 선

[참고자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57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남 동 구 청 장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0. 05 ~ 2020. 10. 20(15일간)
3. 공고대상 : 별 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1	22거1840	마티즈 0.8S AT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15	2020.09.29
2	02머4336	싼타페(SANTAF E)	차*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41-35,	2020.09.29
3	56하2308	K5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28
4	124어8149	E300	케이비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28
5	61호0235	그랜저(GRAND EUR)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9.25
6	08서4125	그랜저(GRAND EUR)	ABDULLAEVA NARMINA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0번길 60,	2020.09.24
7	55부0745	The Beetle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20.09.24
8	44하3905	K3	신한카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23
9	16나7437	A6 3.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23
10	30우9640	A8 LWB 3.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23
11	49나2791	Golf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23
12	56오0250	BMW 520d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9.22
13	26구6835	렉스턴	김*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1	2020.09.21
14	61호5620	G80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9.18
15	23호3242	K3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9.18
16	67호8126	티볼리 에어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9.18
17	57하6578	A6 40 TF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18
18	233라8505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 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구월동)	2020.09.18
19	58나3422	E300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9.16
20	40너0860	BMW 520d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9.14
21	45오1317	제네시스(GENE SIS)	손*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2020.09.11
22	10주9451	스포티지	(주)이레개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12, 301호(구월동, 유성빌딩)	2020.09.11
23	53두0182	BMW 520d xDrive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11
24	65호3688	아반떼(AVANT E)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10
25	08어9911	S560 4Matic L	케이비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10
26	31저5423	베리타스3.6	최*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2020.09.09
27	18하5154	아반떼(AVANT E)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9.09
28	18호5145	K7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09

29	53하9989	쏘나타(SONATA)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08
30	40머0319	S350 d 4Matic L	(주)가천에스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2020.09.08
31	09누7571	Peugeot 3008 1.6 BlueHDi	신한카드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9.04
32	66호0890	Arteo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20.09.04
33	66호0695	Arteo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인천지점)	2020.09.04
34	50저5922	GLC350 e 4Matic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1(구월동)	2020.09.03
35	01다0545	S560 4Matic L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1(구월동)	2020.09.03
36	96수0429	포터II (PORTERII)	조*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2020.09.02
37	128호1795	A4 40 TF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20.09.0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960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성 명 이*성 외 8건
-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 서 류 의 명 칭 2020년 09월 수시분 및 20년 07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 서 류 의 내 용 2020년 09월 수시분 및 20년 07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20.09.30.을 2020.10.31.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6일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20년 09월 수시분 및 2020년 07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640915-*****	이**성	101501-2020-09-2-583-069387	기타	333,020
2	720314-*****	정**민	101501-2020-09-2-550-073929	재송달절차에 의하여도 송달불가(공시송달)	735,740
3	591115-*****	전**자	101501-2020-09-2-660-081292	기타	342,090
4	600909-*****	박**자	101501-2020-09-2-582-081293	기타	3,493,570
5	511019-*****	강**숙	101501-2020-09-2-551-081295	기타	4,766,480
6	460413-*****	오**환	101501-2020-07-2-582-053414	수취인미거주	1,169,700
7	900716-*****	박**원	101501-2020-07-2-580-054931	수취인미거주	1,078,620
8	900924-*****	정**철	101501-2020-07-2-530-054937	수취인미거주	1,132,550
9	120111-*****	주**회**화 **테**원	101501-2020-07-2-800-056323	기타	79,09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62호

공 시 송 달

성 명 정**외 547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0.09.30.일을 2020.10.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남 동 구 청 장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기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1	105301 2020 07 1 570 015736	131314-*****	유**회**정**부**산**설**투**자**	만수동 72-46 1동 17호	38,480		20201031
2	105301 2020 07 1 570 015760	131314-*****	유**회**정**부**산**설**투**자**	만수동 72-46 1동 38호	44,040		20201031
3	105301 2020 07 1 570 015854	131314-*****	유**회**정**부**산**설**투**자**	만수동 72-46 1동 12501호	30,880		20201031
4	105304 2020 09 1 510 000914	120111-*****	주**회**서**기**	구월동 1550-3 303호 외 1건 (면적 51.34㎡)	477,42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5	105304 2020 09 1 510 001476	120111-*****	주**회**그**개**	구월동 1129-20 1동 201호 외 1건 (면적 30.00㎡)	298,4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6	105304 2020 09 1 510 001685	110111-*****	교**자**신**주**회**	구월동 1535 120호 외 5건 (면적 114.15㎡)	926,2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7	105304 2020 09 1 510 002019	124771-*****	정**영**조**법**	구월동 813 외 32건 (면적 8,636.20㎡)	7,254,3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	105304 2020 09 1 510 002094	134511-*****	(주)엘**스**스**창**	구월동 1146-6 1101호 (면적 9.20㎡)	52,5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9	105304 2020 09 1 510 002420	120111-*****	주**회**강**이**씨	구월동 1464 8117호 외 1건 (면적 34.05㎡)	715,5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	105304 2020 09 1 510 002594	120111-*****	주**회** **덴**셋	구월동 1456 408호 외 1건 (면적 27.96㎡)	587,5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1	105304 2020 09 1 510 002679	231501-*****	정**운**병	구월동 1131-3 2동 302호 (면적 44.25㎡)	553,6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	105304 2020 09 1 510 003122	284111-*****	(주)케**비**션**딩**	구월동 1130 125호 외 102건 (면적 252.15㎡)	4,040,1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3	105304 2020 09 1 510 003396	340209-*****	정**용	구월동 1225-39 (면적 127.40㎡)	545,2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	105304 2020 09 1 510 005222	421127-*****	김**자	구월동 1164-17 1동 (면적 21.09㎡)	92,4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	105304 2020 09 1 510 005364	430317-*****	한**자	구월동 1173-19 1동 1호 외 1건 (면적 2,158.60㎡)	656,6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	105304 2020 09 1 510 007439	480117-*****	임**숙	구월동 279-3 102호 외 5건 (면적 488.57㎡)	3,416,4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7	105304 2020 09 1 510 007856	480927-*****	최**운	구월동 1224-9 1동 (면적 82.90㎡)	306,5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	105304 2020 09 1 510 009421	510107-*****	신**임	구월동 1130 56호 (면적 5.70㎡)	73,5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	105304 2020 09 1 510	550119-*****	박**일	구월동 1457 102호 외 2건 (면적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012161			17.20㎡)	389,520	부재	
20	105304 2020 09 1 510 012192	550130-*****	김**자	구월동 1164-9 1동 1호 (면적 58.20㎡)	341,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	105304 2020 09 1 510 013783	561115-*****	강**자	구월동 1548-1 1호 (면적 978.90㎡)	15,114,9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2	105304 2020 09 1 510 014072	570228-*****	정**숙	구월동 1223-2 (면적 103.50㎡)	425,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	105304 2020 09 1 510 014799	571220-*****	임**빈	구월동 1208-27 1동 (면적 120.36㎡)	468,3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	105304 2020 09 1 510 015785	590102-*****	임**기	구월동 427 외 2건 (면적 167.00㎡)	460,1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5	105304 2020 09 1 510 016368	590801-*****	이**경	구월동 1184-1 1동 2호 (면적 198.60㎡)	777,6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	105304 2020 09 1 510 018381	600927-*****	정**석	구월동 1473-2 1동 8001호 (면적 61.05㎡)	1,185,2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7	105304 2020 09 1 510 020850	630127-*****	김**분	구월동 1199-4 302호 (면적 62.80㎡)	462,2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8	105304 2020 09 1 510 020968	630301-*****	강**영	구월동 1129-17 203호 (면적 11.80㎡)	125,5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9	105304 2020 09 1 510 021016	630315-*****	정**숙	구월동 1463 212호 외 1건 (면적 43.80㎡)	1,092,7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0	105304 2020 09 1 510 021841	640225-*****	이**애	구월동 1144-10 1동 608호 (면적 8.71㎡)	63,9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	105304 2020 09 1 510 021941	640331-*****	김**순	구월동 1130 154호 외 2건 (면적 10.50㎡)	135,4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	105304 2020 09 1 510 022267	640814-*****	장**순	구월동 1125 1동 201호 (면적 88.52㎡)	521,5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3	105304 2020 09 1 510 022417	641013-*****	최**옥	구월동 1130 208호 (면적 15.40㎡)	198,6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4	105304 2020 09 1 510 023968	660815-*****	조**문	구월동 1130 263호 외 1건 (면적 55.10㎡)	710,8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5	105304 2020 09 1 510 026197	690519-*****	전**권	구월동 1533-2 501호 (면적 36.06㎡)	362,5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6	105304 2020 09 1 510 031701	760106-*****	권**용	구월동 1519 407호 외 1건 (면적 147.39㎡)	1,238,6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7	105304 2020 09 1 510 035226	811220-*****	이**형	구월동 1534-2 1동 202호 외 3건 (면적 57.59㎡)	545,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	105304 2020 09 1 510 035763	110111-*****	교**자**신**주**회**	구월동 1145-1 1109호 외 51건 (면적 191.67㎡)	1,608,1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	105304 2020 09 1 510 036359	871224-*****	임**규	구월동 1536-3 108호 외 1건 (면적 39.47㎡)	331,7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	105304 2020 09 1 510 036937	870425-*****	이**경	구월동 1143-34 1동 107호 (면적 3.49㎡)	26,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1	105304 2020 09 1 510 037021	820909-*****	오**준	구월동 1462-2 803호 외 2건 (면적 17.60㎡)	312,2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	105304 2020 09 1 510 037591	110111-*****	교**자**신**주**회**	구월동 1133-8 1동 201호 (면적 14.75㎡)	85,5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	105304 2020 09 1 520 005259	430103-*****	황**길	구월동 1253-16 외 1건 (면적 1,065.30㎡)	446,16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44	105304 2020 09 1 520 005528	431015-*****	강**용	구월동 1253-18 (면적 75.80㎡)	300,22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45	105304 2020 09 1 520 010737	530212-*****	허**	구월동 6-50 3호 외 1건 (면적 310.30㎡)	2,200,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	105304 2020 09 1 521 004325	350123-*****	유**순	구월동 1380-7 외 2건 (면적 652.32㎡)	5,015,0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	105304 2020 09 1 521 008462	491009-*****	박**수	구월동 1371-18 1동 (면적 121.10㎡)	878,9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	105304 2020 09 1 521 008958	500303-*****	조**석	구월동 1342-8 (면적 70.30㎡)	353,4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9	105304 2020 09 1 521 011418	540210-*****	김**호	구월동 1103 1동 (면적 76.41㎡)	349,9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	105304 2020 09 1 521 013278	560313-*****	변**례	구월동 1354-2 (면적 63.30㎡)	335,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	105304 2020 09 1 521 016974	570308-*****	김**숙	구월동 1353 (면적 88.10㎡)	489,7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2	105304 2020 09 1 522 002553	110111-*****	교**자**신**주**회**	구월동 1264 313호 외 12건 (면적 223.90㎡)	4,744,00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53	105304 2020 09 1 522 003645	360809-*****	정**철	구월동 1290-14 (면적 236.00㎡)	1,118,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4	105304 2020 09 1 522 004314	330106-*****	강**선	구월동 1294-3 1동 외 1건 (면적 200.40㎡)	1,176,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5	105304 2020 09 1 522 004963	420323-*****	유**갑	구월동 1301 (면적 83.10㎡)	356,76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56	105304 2020 09 1 522 005315	430210-*****	홍**표	구월동 1271-3 4호 (면적 40.96㎡)	348,8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7	105304 2020 09 1 522 007822	480902-*****	고**진	구월동 1265-21 (면적 49.60㎡)	325,8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8	105304 2020 09 1 522 010933	530513-*****	임**자	구월동 1264-10 8101호 (면적 127.47㎡)	2,655,4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9	105304 2020 09 1 522 012197	550131-*****	김**숙	구월동 635-24 (면적 902.00㎡)	133,5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60	105304 2020 09 1 522 013047	560104-*****	이**복	구월동 1264-72 1호 (면적 74.40㎡)	324,1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1	105304 2020 09 1 522 016099	590413-*****	박**자	구월동 1264-72 2호 (면적 74.40㎡)	324,1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2	105304 2020 09 1 522 016367	590731-*****	박**지	구월동 1267-5 8002호 외 1건 (면적 210.12㎡)	2,506,04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63	105304 2020 09 1 522 017593	600107-*****	이**자	구월동 1264-30 1동 1호 (면적 126.91㎡)	453,6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4	105304 2020 09 1 522	610620-*****	전**순	구월동 1267-5 6호 외 1건 (면적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019248			60.36㎡)	599,510	부재	
65	105304 2020 09 1 522 019744	620103-*****	윤**구	구월동 1280-3 1동 1호 (면적 168.12㎡)	995,6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6	105304 2020 09 1 522 026553	691115-*****	이**상	구월동 1268-12 1동 1호 (면적 94.01㎡)	371,5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67	105304 2020 09 1 522 027320	630313-*****	김**석	구월동 1261-17 (면적 131.40㎡)	559,2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8	105304 2020 09 1 522 027323	690620-*****	김**	구월동 1261-17 (면적 131.40㎡)	559,2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69	105304 2020 09 1 522 028122	700319-*****	조**숙	구월동 1268-12 1동 2호 (면적 94.01㎡)	371,5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70	105304 2020 09 1 522 029861	720917-*****	백**례	구월동 1270-7 1동 (면적 189.60㎡)	644,5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71	105304 2020 09 1 522 030606	731205-*****	구**원	구월동 1265-9 1동 8101호 외 1건 (면적 1,035.21㎡)	1,450,7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72	105304 2020 09 1 530 000167	110111-*****	성**건**(주)	간석동 514 7001동 8102호 (면적 58.40㎡)	157,1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73	105304 2020 09 1 530 002417	110111-*****	교**자**신**주**회**	간석동 313-1 1동 204호 외 8건 (면적 114.09㎡)	534,4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74	105304 2020 09 1 530 003857	380213-*****	이**구	간석동 321-15 2호 (면적 14.20㎡)	14,2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75	105304 2020 09 1 530 004429	400612-*****	김**자	간석동 283-8 (면적 269.30㎡)	2,587,6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76	105304 2020 09 1 530 006480	460515-*****	강**태	간석동 900-128 외 2건 (면적 94.56㎡)	615,6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77	105304 2020 09 1 530 017350	591022-*****	나**수	간석동 302-8 202호 (면적 47.70㎡)	333,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78	105304 2020 09 1 530 018902	610305-*****	순**순	간석동 551-2 1동 (면적 96.69㎡)	392,9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79	105304 2020 09 1 530 019704	611220-*****	최**락	간석동 907-2 (면적 152.20㎡)	544,11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80	105304 2020 09 1 530 022983	110111-*****	교**자**신**주**회**	간석동 273-1 1동 401호 외 70건 (면적 874.95㎡)	9,346,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1	105304 2020 09 1 530 027576	620129-*****	최**이	간석동 302-8 202호 (면적 47.70㎡)	333,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82	105304 2020 09 1 530 032066	761108-*****	강**수	간석동 283-6 1동 (면적 114.91㎡)	443,2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3	105304 2020 09 1 530 032479	771008-*****	김**선	간석동 520 303호 외 1건 (면적 78.35㎡)	559,9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4	105304 2020 09 1 530 037203	801116-*****	김**현	간석동 341-4 1동 2호 (면적 251.90㎡)	1,341,6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5	105304 2020 09 1 540 002849	260325-*****	이**복	간석동 140-7 (면적 180.20㎡)	1,117,2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6	105304 2020 09 1 540 005055	420610-*****	강**구	간석동 205-1 3동 65호 외 1건 (면적 5.00㎡)	50,3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87	105304 2020 09 1 540 018220	600803-*****	윤**희	간석동 194-3 204호 (면적 53.70㎡)	439,9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8	105304 2020 09 1 540 024132	661103-*****	박**식	간석동 206-8 (면적 119.40㎡)	617,4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89	105304 2020 09 1 540 024215	661214-*****	정**수	간석동 206-8 (면적 119.40㎡)	617,4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90	105304 2020 09 1 550 000636	120111-*****	신**주**건**	간석동 32-56 1동 1호 외 2건 (면적 215.70㎡)	944,6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91	105304 2020 09 1 550 002729	231540-*****	대**예**교**로**성**교**	간석동 45-2 1동 1호 (면적 80.80㎡)	357,6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92	105304 2020 09 1 550 002913	282004-*****	장**관	간석동 산 18 7호 외 1건 (면적 1,537.24㎡)	28,0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93	105304 2020 09 1 550 003276	311207-*****	김**흥	간석동 산 18 2호 외 5건 (면적 3,420.84㎡)	65,1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94	105304 2020 09 1 550 004923	420218-*****	곽**량	간석동 1-393 (면적 334.10㎡)	810,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95	105304 2020 09 1 550 005167	421015-*****	김**순	간석동 1-381 (면적 321.10㎡)	842,1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96	105304 2020 09 1 550 005914	441105-*****	김**자	간석동 39-8 50호 (면적 4.20㎡)	24,7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97	105304 2020 09 1 550 006830	470115-*****	소**문	간석동 32-56 1동 2호 외 2건 (면적 334.00㎡)	1,627,34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98	105304 2020 09 1 550 009309	501018-*****	한**숙	간석동 224-531 9호 외 1건 (면적 11.78㎡)	54,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99	105304 2020 09 1 550 010590	521128-*****	문**성	간석동 1-279 (면적 696.30㎡)	2,837,9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00	105304 2020 09 1 550 012790	550916-*****	최**경	간석동 100-2 외 1건 (면적 69.40㎡)	261,9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1	105304 2020 09 1 550 014307	570601-*****	최**경	간석동 100-2 외 1건 (면적 69.40㎡)	261,9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2	105304 2020 09 1 550 017294	521020-*****	주**숙	간석동 41-57 (면적 22.80㎡)	162,2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03	105304 2020 09 1 550 017879	600325-*****	안**수	간석동 941 1동 8106호 (면적 114.00㎡)	618,6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4	105304 2020 09 1 550 018056	600602-*****	김**태	간석동 6-16 (면적 89.97㎡)	329,0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5	105304 2020 09 1 550 019660	611128-*****	김**한	간석동 770-2 (면적 143.90㎡)	683,9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06	105304 2020 09 1 550 020627	621114-*****	이**숙	간석동 79-1 (면적 182.30㎡)	600,32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107	105304 2020 09 1 550 022881	650404-*****	이**성	간석동 916-18 106호 외 1건 (면적 19.32㎡)	148,3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08	105304 2020 09 1 550 024881	671019-*****	노**원	간석동 51-11 1호 외 1건 (면적 223.40㎡)	2,382,4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9	105304 2020 09 1 550	690416-*****	김**경	간석동 916-18 101호 (면적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026130			8.40㎡)	70,530	부재	
110	105304 2020 09 1 550 026204	690522-*****	정**숙	간석동 1-155 2호 외 2건 (면적 132.71㎡)	357,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11	105304 2020 09 1 550 027996	700201-*****	이**찬	간석동 39-8 56호 외 1건 (면적 293.81㎡)	1,715,690		20201031
112	105304 2020 09 1 550 028448	700901-*****	이**수	간석동 179-6 602호 (면적 70.70㎡)	482,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13	105304 2020 09 1 550 030508	731003-*****	이**주	간석동 122-26 502호 (면적 9.70㎡)	46,6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14	105304 2020 09 1 550 033629	790722-*****	이**선	간석동 170-27 1동 502호 (면적 12.36㎡)	59,0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15	105304 2020 09 1 550 034308	720115-*****	전**진	간석동 113-6 1동 1104호 (면적 9.32㎡)	63,2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16	105304 2020 09 1 550 036603	110111-*****	교**자**신**주**회**	간석동 171-2 1동 503호 (면적 10.65㎡)	62,1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17	105304 2020 09 1 551 000120	110111-*****	에**치**건**(주)	간석동 611-8 1동 8000호 외 1건 (면적 108.80㎡)	382,88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118	105304 2020 09 1 551 000243	110111-*****	남**중**업	간석동 229-1 1동 52호 (면적 3.90㎡)	15,3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19	105304 2020 09 1 551 000630	120111-*****	원**중**건**(주)	간석동 229-1 5001동 132호 외 27건 (면적 297.90㎡)	1,307,2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0	105304 2020 09 1 551 002579	134514-*****	스**트** **한**사	간석동 612-2 203호 (면적 7.60㎡)	39,3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21	105304 2020 09 1 551 009701	510806-*****	박**식	간석동 256-1 (면적 78.60㎡)	393,8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2	105304 2020 09 1 551 013778	561115-*****	장**조	간석동 229-1 1동 17호 (면적 4.20㎡)	16,5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3	105304 2020 09 1 551 014288	570521-*****	홍**갑	간석동 248-6 1동 1호 (면적 183.50㎡)	934,0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4	105304 2020 09 1 551 014349	110111-*****	교**자**신**주**회**	간석동 616-19 1동 (면적 156.09㎡)	549,7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25	105304 2020 09 1 551 018900	610305-*****	김**숙	간석동 229-1 1동 83호 (면적 3.20㎡)	12,6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6	105304 2020 09 1 551 019139	610512-*****	조**구	간석동 229-1 1동 60호 (면적 4.00㎡)	15,7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27	105304 2020 09 1 551 020827	630122-*****	최**철	간석동 229-1 1동 74호 (면적 4.00㎡)	15,78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8	105304 2020 09 1 551 031381	750405-*****	김**택	간석동 241-2 1동 401호 (면적 4.06㎡)	20,1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29	105304 2020 09 1 551 036030	850530-*****	유**석	간석동 233-4 2호 (면적 192.90㎡)	1,177,8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0	105304 2020 09 1 560 021706	640113-*****	김**철	만수동 591-4 외 2건 (면적 2,041.20㎡)	488,1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1	105304 2020 09 1 560 023386	651202-*****	최**희	만수동 957-12 (면적 333.30㎡)	1,898,2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2	105304 2020 09 1 560 028312	110111-*****	교**자**신**주**회**	만수동 967-13 202호 외 2건 (면적 62.00㎡)	289,7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3	105304 2020 09 1 560 029049	710703-*****	이**행	만수동 370-6 (면적 34.18㎡)	87,3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34	105304 2020 09 1 570 002047	131314-*****	유**회**정**부**산**설**투**자**	만수동 72-46 1동 38호 외 2건 (면적 39.44㎡)	460,540		20201031
135	105304 2020 09 1 570 002278	120111-*****	주**회**공**	만수동 5-416 외 3건 (면적 3,011.00㎡)	10,575,5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6	105304 2020 09 1 570 002944	282004-*****	이**호	만수동 74-5 3호 (면적 46.00㎡)	354,71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137	105304 2020 09 1 570 003862	380215-*****	민**기	만수동 873-7 (면적 191.80㎡)	1,476,5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8	105304 2020 09 1 570 006565	460730-*****	김**덕	만수동 73-22 1동 2호 (면적 41.80㎡)	312,5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39	105304 2020 09 1 570 008771	410304-*****	조**무	만수동 5-230 1동 201호 (면적 16.88㎡)	56,9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40	105304 2020 09 1 570 012779	550912-*****	박**육	만수동 80-33 1호 외 1건 (면적 55.80㎡)	322,5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41	105304 2020 09 1 570 013006	551221-*****	윤**자	만수동 6-43 1동 12208호 (면적 2.50㎡)	12,6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2	105304 2020 09 1 570 035190	811103-*****	김**환	만수동 5-130 1동 1호 (면적 7.70㎡)	31,6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43	105304 2020 09 1 580 005858	440908-*****	이**원	만수동 1118-2 1동 504호 외 1건 (면적 62.68㎡)	553,20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144	105304 2020 09 1 580 012667	550801-*****	김**진	만수동 109-10 1호 외 3건 (면적 145.40㎡)	2,6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5	105304 2020 09 1 580 021131	630417-*****	이**진	만수동 109-127 (면적 115.00㎡)	427,0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6	105304 2020 09 1 580 027630	690920-*****	이**미	만수동 844-167 외 1건 (면적 90.71㎡)	365,1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7	105304 2020 09 1 580 029523	720304-*****	김**진	만수동 109 1동 201호 (면적 156.29㎡)	594,4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8	105304 2020 09 1 581 003134	290222-*****	정**연	만수동 산 71-5 외 1건 (면적 20,248.00㎡)	673,5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49	105304 2020 09 1 581 008021	490106-*****	이**완	만수동 32 203호 (면적 67.70㎡)	382,6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0	105304 2020 09 1 581 028163	700407-*****	이**일	만수동 18 1동 108호 외 1건 (면적 52.60㎡)	322,6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51	105304 2020 09 1 582 002890	281110-*****	장**례	만수동 945-14 1동 (면적 200.80㎡)	773,4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52	105304 2020 09 1 582 004478	400823-*****	김**자	만수동 924-17 (면적 78.90㎡)	367,0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53	105304 2020 09 1 582 010789	530306-*****	유**희	만수동 920-3 1호 외 1건 (면적 358.94㎡)	2,082,6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4	105304 2020 09 1 582	670125-*****	박**민	만수동 875-3 (면적 272.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024312				2,347,510		
155	105304 2020 09 1 582 024838	670930-*****	김**순	만수동 903-5 401호 (면적 79.00㎡)	347,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6	105304 2020 09 1 582 025547	680821-*****	조**배	만수동 903-5 301호 (면적 85.20㎡)	374,6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7	105304 2020 09 1 583 000199	110111-*****	신**중**건**(주)	만수동 1038 8002호 외 1건 (면적 10.20㎡)	49,9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58	105304 2020 09 1 583 004593	410128-*****	최**섭	만수동 1089-6 1호 외 5건 (면적 2,349.45㎡)	1,246,8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59	105304 2020 09 1 583 005491	430827-*****	김**명	만수동 696-7 1동 외 2건 (면적 389.50㎡)	858,6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0	105304 2020 09 1 583 005584	431215-*****	이**분	만수동 1078-6 (면적 121.80㎡)	590,2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1	105304 2020 09 1 583 007091	470609-*****	이**애	만수동 1089-6 2호 (면적 138.60㎡)	726,2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2	105304 2020 09 1 583 010432	520820-*****	김**선	만수동 1042 402호 (면적 61.30㎡)	306,5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3	105304 2020 09 1 583 011514	540325-*****	이**숙	만수동 1041 202호 외 1건 (면적 34.00㎡)	341,2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4	105304 2020 09 1 583 013118	560122-*****	최**섭	만수동 1019-4 401호 외 3건 (면적 130.60㎡)	1,387,2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5	105304 2020 09 1 583 014005	570207-*****	이**옥	만수동 1024-1 2호 외 1건 (면적 465.20㎡)	1,183,5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6	105304 2020 09 1 583 017592	600107-*****	최**옥	만수동 1048 104호 외 2건 (면적 62.93㎡)	366,8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67	105304 2020 09 1 583 017795	600303-*****	강**숙	만수동 1081-12 7동 8001호 외 3건 (면적 74.50㎡)	454,7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68	105304 2020 09 1 583 018356	600919-*****	최**호	만수동 1086 6동 201호 (면적 190.10㎡)	1,316,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69	105304 2020 09 1 583 019987	620310-*****	최**옥	만수동 987-4 (면적 218.80㎡)	1,545,84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170	105304 2020 09 1 583 024803	670910-*****	박**원	만수동 1082-1 2동 8002호 외 5건 (면적 193.36㎡)	1,243,3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71	105304 2020 09 1 583 034050	700925-*****	박**주	만수동 1025-4 (면적 69.80㎡)	149,920		20201031
172	105304 2020 09 1 650 000010	011112-*****	홍**례	운연동 180-1 1호 (면적 926.00㎡)	87,8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73	105304 2020 09 1 650 000073	000407-*****	최**진	운연동 40-6 (면적 194.00㎡)	645,0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74	105304 2020 09 1 650 002112	134811-*****	(주)신**계**자**학	서창동 743-2 (면적 742.40㎡)	4,930,05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175	105304 2020 09 1 650 002168	135811-*****	(주)피**지**로**	서창동 719-1 1동 105호 외 11건 (면적 210.79㎡)	809,8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76	105304 2020 09 1 650 002217	110111-*****	교**자**신**주**회**	서창동 708-4 407호 외 45건 (면적 1,857.44㎡)	23,146,90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177	105304 2020 09 1 650 002368	121111-*****	주**회**캐**비**원**매	장수동 산 182-2 3호 외 2건 (면적 2,658.30㎡)	208,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78	105304 2020 09 1 650 002386	150111-*****	주**회**토**정**	장수동 산 189-1 3호 외 10건 (면적 3,524.53㎡)	134,450		20201031
179	105304 2020 09 1 650 002450	160111-*****	농**회**법**우**경**주**회**	장수동 348-1 (면적 432.00㎡)	93,980		20201031
180	105304 2020 09 1 650 002461	131111-*****	주**회**태**법**경**	장수동 산 182-2 3호 (면적 337.00㎡)	16,020		20201031
181	105304 2020 09 1 650 002592	120114-*****	농**회**법**유**회**라**프**	장수동 산 61-8 3호 외 1건 (면적 739.10㎡)	24,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2	105304 2020 09 1 650 002888	280920-*****	박**원	장수동 산 122-1 4호 외 1건 (면적 826.50㎡)	59,3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3	105304 2020 09 1 650 002912	282000-*****	최**식	운연동 12-3 (면적 565.00㎡)	1,258,75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184	105304 2020 09 1 650 002954	282004-*****	김**현	장수동 183 1호 (면적 175.00㎡)	5,0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5	105304 2020 09 1 650 002956	282004-*****	이**승	장수동 209 1호 (면적 69.50㎡)	4,1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6	105304 2020 09 1 650 002962	282004-*****	원**순	장수동 산 56-1 (면적 657.00㎡)	2,4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87	105304 2020 09 1 650 002969	282004-*****	박**남	장수동 산 121-2 2호 (면적 99.40㎡)	2,4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8	105304 2020 09 1 650 002982	282004-*****	한**교	장수동 628 4호 (면적 69.80㎡)	8,9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89	105304 2020 09 1 650 002988	282004-*****	이**성	서창동 산 42-6 3호 외 5건 (면적 325.10㎡)	11,7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90	105304 2020 09 1 650 003023	282004-*****	최**참	운연동 산 79-1 1호 (면적 679.50㎡)	30,1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1	105304 2020 09 1 650 003026	282004-*****	최**참	운연동 산 75 1호 외 3건 (면적 1,934.00㎡)	46,9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2	105304 2020 09 1 650 003034	282004-*****	이**순	운연동 산 82-3 (면적 198.00㎡)	10,7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193	105304 2020 09 1 650 003116	282004-*****	한**교	장수동 628 5호 (면적 69.80㎡)	8,9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4	105304 2020 09 1 650 004674	410525-*****	김**보	운연동 149-2 (면적 1,068.00㎡)	180,28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5	105304 2020 09 1 650 005014	420508-*****	이**하	운연동 60 (면적 1,663.00㎡)	1,198,8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6	105304 2020 09 1 650 005385	430404-*****	김**분	서창동 554-5 401호 외 1건 (면적 94.00㎡)	472,5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7	105304 2020 09 1 650 006798	470104-*****	예**희	서창동 271 외 1건 (면적 3,728.00㎡)	503,8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8	105304 2020 09 1 650 007591	480406-*****	이**근	운연동 485-1 (면적 102.00㎡)	9,0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9	105304 2020 09 1 650	521228-*****	서**범	운연동 384 (면적 463.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010641				1,235,940		
200	105304 2020 09 1 650 012170	550122-*****	안**진	운연동 459-50 (면적 2,340.00㎡)	1,867,0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1	105304 2020 09 1 650 012627	550715-*****	황**수	서창동 707-3 507호 외 2건 (면적 139.27㎡)	1,246,7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2	105304 2020 09 1 650 015278	580711-*****	정**숙	서창동 663-1 1동 104호 외 3건 (면적 84.47㎡)	514,5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03	105304 2020 09 1 650 017010	540330-*****	최**순	운연동 43-7 (면적 119.00㎡)	351,8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4	105304 2020 09 1 650 018362	600920-*****	조**서	서창동 703-2 501호 외 1건 (면적 51.74㎡)	400,4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05	105304 2020 09 1 650 019299	610707-*****	정**영	장수동 산 182-2 6호 외 13건 (면적 323.65㎡)	5,7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6	105304 2020 09 1 650 019423	610823-*****	최**만	서창동 686-1 303호 외 1건 (면적 96.28㎡)	787,7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7	105304 2020 09 1 650 021680	640104-*****	김**준	장수동 636 (면적 142.00㎡)	18,2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08	105304 2020 09 1 650 025033	680105-*****	박**원	서창동 735-12 (면적 275.40㎡)	1,316,2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09	105304 2020 09 1 650 025338	680516-*****	김**식	운연동 257-2 1호 (면적 314.00㎡)	578,1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10	105304 2020 09 1 650 029574	720402-*****	심**희	운연동 252-2 1호 외 1건 (면적 426.00㎡)	944,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11	105304 2020 09 1 650 031923	760628-*****	이**상	서창동 645-7 (면적 121.80㎡)	325,7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12	105304 2020 09 1 650 031950	760802-*****	정**미	서창동 645-7 (면적 121.80㎡)	325,7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13	105304 2020 09 1 650 032282	770409-*****	배**훈	장수동 170-4 외 1건 (면적 4,601.00㎡)	822,6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4	105304 2020 09 1 650 035156	811001-*****	김**경	서창동 산 5 외 1건 (면적 14,281.00㎡)	2,876,9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5	105304 2020 09 1 650 035768	831123-*****	조**진	서창동 563-10 101호 외 1건 (면적 121.73㎡)	602,6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6	105304 2020 09 1 655 002312	120111-*****	(주)제**제**컨**팅	서창동 682 101호 (면적 85.90㎡)	342,9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7	105304 2020 09 1 655 002611	200111-*****	리**에**주**회**	서창동 688 116호 (면적 16.83㎡)	144,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18	105304 2020 09 1 655 026205	690522-*****	이**덕	서창동 702 113동 105호 외 1건 (면적 2,105.04㎡)	523,5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19	105304 2020 09 1 660 001977	124611-*****	유**전**(주)	수산동 266-1 (면적 697.00㎡)	2,187,29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220	105304 2020 09 1 660 002176	139830-*****	인**광**시**동**	도림동 426-1 외 3건 (면적 23.00㎡)	3,28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1	105304 2020 09 1 660 002415	120111-*****	농**회**법**식**사**썬**	수산동 467 외 7건 (면적 1,973.00㎡)	434,4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2	105304 2020 09 1 660 002588	110111-*****	새**주**회**	도림동 산 68-2 27호 외 2건 (면적 2,274.41㎡)	301,98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223	105304 2020 09 1 660 002852	260419-*****	공**규	수산동 163 1호 외 1건 (면적 732.64㎡)	22,7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4	105304 2020 09 1 660 003066	282004-*****	정**인	도림동 10-2 1호 (면적 41.33㎡)	2,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5	105304 2020 09 1 660 003067	282004-*****	정**민	도림동 10-2 2호 (면적 41.33㎡)	2,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6	105304 2020 09 1 660 003068	282004-*****	정**성	도림동 10-2 3호 (면적 41.33㎡)	2,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7	105304 2020 09 1 660 003069	282004-*****	정**양	도림동 10-2 4호 (면적 41.33㎡)	2,9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28	105304 2020 09 1 660 003071	282004-*****	정**룡	도림동 10-2 6호 (면적 41.33㎡)	2,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29	105304 2020 09 1 660 003076	282004-*****	송**만	수산동 산 52-2 2호 (면적 132.30㎡)	2,8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0	105304 2020 09 1 660 003084	282004-*****	문**녀	도림동 산 59-3 외 2건 (면적 541.45㎡)	375,95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231	105304 2020 09 1 660 005191	421104-*****	민**자	도림동 664-4 1등 (면적 58.05㎡)	353,6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32	105304 2020 09 1 660 005669	440228-*****	정**자	도림동 산 67 2호 (면적 826.50㎡)	26,7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33	105304 2020 09 1 660 005738	440502-*****	송**창	수산동 산 54 2호 (면적 1,765.00㎡)	106,7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4	105304 2020 09 1 660 006171	450710-*****	문**자	도림동 266-28 (면적 1,776.00㎡)	366,6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5	105304 2020 09 1 660 006288	451118-*****	오**환	도림동 634-4 (면적 85.60㎡)	328,5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6	105304 2020 09 1 660 008395	490825-*****	조**엽	남촌동 211-11 외 1건 (면적 3,947.00㎡)	443,2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37	105304 2020 09 1 660 009798	511017-*****	양**옥	도림동 634-1 (면적 207.50㎡)	692,6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8	105304 2020 09 1 660 013814	561202-*****	곽**자	수산동 147-2 외 1건 (면적 1,957.00㎡)	78,58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39	105304 2020 09 1 660 016068	590401-*****	김**임	남촌동 34-1 (면적 2,083.00㎡)	303,6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0	105304 2020 09 1 660 016331	590718-*****	곽**용	수산동 147-2 외 1건 (면적 3,914.00㎡)	157,1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41	105304 2020 09 1 660 016457	590901-*****	김**미	도림동 327 외 2건 (면적 1,535.00㎡)	792,8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2	105304 2020 09 1 660 017806	600307-*****	이**천	도림동 356-1 6호 외 8건 (면적 415.64㎡)	1,126,0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3	105304 2020 09 1 660 017878	600325-*****	박**숙	도림동 346-6 (면적 430.00㎡)	1,456,1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44	105304 2020 09 1 660	610622-*****	박**기	남촌동 320-2 8013호 (면적		수령거부 수취인	20201031

	019255			10.70m ²)	44,680	부재	
245	105304 2020 09 1 660 019799	620118-*****	이**영	도림동 584-3 (면적 845.00m ²)	213,6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46	105304 2020 09 1 660 022236	640729-*****	김**희	수산동 135-3 (면적 625.00m ²)	1,773,7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47	105304 2020 09 1 660 023211	650909-*****	장**균	도림동 532 외 1건 (면적 1,491.00m ²)	712,5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8	105304 2020 09 1 660 029160	710827-*****	이**혁	도림동 산 9-1 1호 외 3건 (면적 15,719.00m ²)	412,6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49	105304 2020 09 1 660 029890	721002-*****	공**욱	수산동 163 20호 외 2건 (면적 531.82m ²)	457,4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50	105304 2020 09 1 660 031569	750914-*****	곽**수	도림동 425 외 2건 (면적 704.74m ²)	92,88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51	105304 2020 09 1 660 034465	750304-*****	홍**원	도림동 산 24-1 74호 (면적 36.00m ²)	3,8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2	105304 2020 09 1 660 035572	830203-*****	이**현	남촌동 510-17 (면적 7,965.00m ²)	1,792,8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3	105304 2020 09 1 660 036899	810107-*****	표**기	남촌동 129-3 1호 (면적 510.00m ²)	60,7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4	105304 2020 09 1 660 037764	911111-*****	이**정	남촌동 82-4 외 2건 (면적 749.00m ²)	769,2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5	105304 2020 09 1 690 000253	110111-*****	(주)에**디**인**롭	논현동 677-6 1동 1013호 외 1건 (면적 10.04m ²)	118,0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56	105304 2020 09 1 690 002295	120111-*****	디**디**시**합**축**식**사	논현동 673-4 (면적 1,580.10m ²)	22,208,5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57	105304 2020 09 1 690 002328	121111-*****	주**회**녹**그**에**지	논현동 산 19-4 (면적 198.00m ²)	15,4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8	105304 2020 09 1 690 002533	110111-*****	(주)현**	논현동 677-6 1동 501호 외 9건 (면적 224.22m ²)	3,227,8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59	105304 2020 09 1 690 003097	282004-*****	천**기	논현동 산 1-3 (면적 298.00m ²)	6,3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0	105304 2020 09 1 690 003481	350313-*****	한**택	논현동 58 3호 (면적 19.60m ²)	2,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1	105304 2020 09 1 690 003549	350928-*****	왕**분	논현동 39-1 외 1건 (면적 1,279.00m ²)	438,2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62	105304 2020 09 1 690 008801	490415-*****	이**숙	논현동 66-24 104동 1607호 (면적 7.22m ²)	53,0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3	105304 2020 09 1 690 010124	520407-*****	김**주	논현동 33-68 1호 (면적 1,654.00m ²)	1,920,1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4	105304 2020 09 1 690 016846	570405-*****	김**심	논현동 652-1 (면적 384.90m ²)	1,182,5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65	105304 2020 09 1 690 018159	600712-*****	한**자	논현동 660-17 1동 (면적 99.94m ²)	454,8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6	105304 2020 09 1 690 019965	620304-*****	이**진	논현동 676-6 1동 902호 외 6건 (면적 153.44m ²)	1,378,4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67	105304 2020 09 1 690 020432	620908-*****	이**숙	논현동 111-398 (면적 109.96㎡)	741,4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8	105304 2020 09 1 690 020596	621105-*****	김**수	논현동 111-58 1호 (면적 94.00㎡)	519,3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69	105304 2020 09 1 690 022325	640904-*****	문**숙	논현동 599-1 2동 204호 외 1건 (면적 123.71㎡)	550,3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70	105304 2020 09 1 690 023485	660107-*****	한**교	논현동 673-1 (면적 560.15㎡)	3,534,0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71	105304 2020 09 1 690 023639	660305-*****	이**걸	논현동 672-2 1동 203호 (면적 36.54㎡)	313,7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72	105304 2020 09 1 690 026308	690716-*****	배**동	논현동 676-6 1동 402호 외 1건 (면적 40.68㎡)	2,038,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73	105304 2020 09 1 690 030810	740327-*****	강**철	논현동 614-5 (면적 48.06㎡)	204,1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74	105304 2020 09 1 690 032789	780726-*****	장**미	논현동 595-15 (면적 136.80㎡)	522,0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75	105304 2020 09 1 690 032802	780807-*****	김**호	논현동 680-1 1동 93호 (면적 5.17㎡)	58,680		20201031
276	105304 2020 09 1 690 034385	730620-*****	임**옥	논현동 680-1 1동 31303호 (면적 94.51㎡)	1,171,7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77	105304 2020 09 1 690 034457	740724-*****	김**필	논현동 677-6 1동 306호 (면적 27.53㎡)	323,5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78	105304 2020 09 1 700 000603	120111-*****	삼**상**	논현동 산 66-1 25호 (면적 1,542.20㎡)	115,5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79	105304 2020 09 1 700 000617	120111-*****	동**익**프**스	논현동 산 66-1 23호 (면적 771.10㎡)	57,7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80	105304 2020 09 1 700 000785	120111-*****	윤**화**주**회**	논현동 산 66-1 35호 (면적 771.10㎡)	57,7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81	105304 2020 09 1 700 000892	120111-*****	(주)명**씨**스	논현동 642-2 101동 1003호 외 2건 (면적 2,623.20㎡)	9,822,2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82	105304 2020 09 1 700 001120	120111-*****	금**중**건**(주)	논현동 645-1 1동 501호 외 24건 (면적 81.51㎡)	563,7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83	105304 2020 09 1 700 002037	131111-*****	주**회**미**스**리	논현동 644-4 1동 101호 (면적 103.62㎡)	829,5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84	105304 2020 09 1 700 004349	400202-*****	이**렬	논현동 628-5 1동 (면적 92.90㎡)	560,9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85	105304 2020 09 1 700 006958	470315-*****	박**방	논현동 636-2 1동 303호 (면적 42.01㎡)	326,7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86	105304 2020 09 1 700 007326	471111-*****	정**호	논현동 646-2 1동 701호 (면적 4.52㎡)	30,4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287	105304 2020 09 1 700 014273	570515-*****	강**호	논현동 560-1 외 1건 (면적 421.40㎡)	1,784,03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288	105304 2020 09 1 700 017916	600406-*****	리**폐**로**	논현동 629-10 1동 (면적 77.69㎡)	448,43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289	105304 2020 09 1 700	640426-*****	이**자	논현동 632-1 1동 308호 (면적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022011			49.75㎡)	532,110	부재	
290	105304 2020 09 1 700 022064	640512-*****	방**영	논현동 618-1 719동 301호 (면적 70.20㎡)	385,96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291	105304 2020 09 1 700 023135	650808-*****	표**철	논현동 631-9 1동 802호 외 1건 (면적 64.78㎡)	672,1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92	105304 2020 09 1 700 023428	651216-*****	김**숙	논현동 645-1 1동 501호 외 24건 (면적 368.20㎡)	3,110,6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93	105304 2020 09 1 700 030287	730505-*****	김**희	논현동 628-6 1동 (면적 80.41㎡)	485,5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94	105304 2020 09 1 700 036954	801103-*****	심**민	논현동 645-8 1동 1103호 (면적 3.36㎡)	22,6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295	105304 2020 09 1 710 000391	110111-*****	고**2**역**시**발**업**식**사	고잔동 129 외 7건 (면적 3,538.00㎡)	16,907,1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96	105304 2020 09 1 710 000571	120111-*****	(**류*주**회** **니**	고잔동 246-103 1호 외 2건 (면적 3,500.25㎡)	20,276,9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97	105304 2020 09 1 710 001617	120111-*****	주**회**해**울	고잔동 246-115 1호 (면적 524.00㎡)	2,012,7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98	105304 2020 09 1 710 002142	135511-*****	케**제**주**회**	논현동 770-5 1호 (면적 171.58㎡)	1,141,2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299	105304 2020 09 1 710 002202	160111-*****	주**회**다**치	논현동 769-2 1동 1호 외 1건 (면적 362.69㎡)	3,669,7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0	105304 2020 09 1 710 010240	520522-*****	조**호	고잔동 246-91 1동 1호 (면적 362.00㎡)	1,390,4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01	105304 2020 09 1 710 011021	530707-*****	여**환	논현동 751-1 1동 150291호 (면적 18.41㎡)	167,7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02	105304 2020 09 1 710 016636	591112-*****	허**운	고잔동 372-20 (면적 1.17㎡)	2,4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3	105304 2020 09 1 710 021247	630601-*****	김**중	고잔동 462-6 외 3건 (면적 656.00㎡)	2,245,0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4	105304 2020 09 1 710 021857	640228-*****	김**숙	고잔동 306-1 외 1건 (면적 166.60㎡)	602,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05	105304 2020 09 1 710 021916	640318-*****	백**기	고잔동 302-2 1동 외 1건 (면적 348.00㎡)	1,408,64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306	105304 2020 09 1 710 023430	651217-*****	이**숙	논현동 746-3 1동 506호 (면적 19.83㎡)	180,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7	105304 2020 09 1 710 023627	660301-*****	이**학	고잔동 246-109 1호 외 1건 (면적 1,060.00㎡)	4,071,4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8	105304 2020 09 1 710 024687	670715-*****	이**욱	논현동 743-2 1동 301호 외 2건 (면적 195.61㎡)	1,288,1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09	105304 2020 09 1 710 025685	681015-*****	박**은	논현동 764-4 1동 105호 (면적 27.57㎡)	167,1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10	105304 2020 09 1 800 000318	110111-*****	(주)티**에**트**이**	남촌동 611-4 1호 (면적 3,300.80㎡)	10,975,1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1	105304 2020 09 1 800 000874	120111-*****	테**전**(주)	논현동 430-3 3호 (면적 170.00㎡)	542,6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2	105304 2020 09 1 800 001350	120111-*****	진**글**벌**드(주)	고잔동 702-11 (면적 1,927.10㎡)	7,109,8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3	105304 2020 09 1 800 001385	120111-*****	(주)시**템**업	고잔동 723-16 1호 외 2건 (면적 5,827.65㎡)	21,220,6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4	105304 2020 09 1 800 001462	120111-*****	주**회**이**스**크	고잔동 704-9 외 2건 (면적 1,547.59㎡)	6,124,1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5	105304 2020 09 1 800 001496	120111-*****	신**금**주**회**	고잔동 701-19 (면적 1,615.70㎡)	5,827,7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6	105304 2020 09 1 800 001497	120111-*****	주**회**현**	고잔동 730-6 외 1건 (면적 1,945.38㎡)	10,491,5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7	105304 2020 09 1 800 001615	120111-*****	(주)누**술**텍	고잔동 693-14 외 1건 (면적 1,616.62㎡)	5,846,5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8	105304 2020 09 1 800 001729	120111-*****	신**케**칼(주)	논현동 450 1동 102호 외 1건 (면적 101.40㎡)	556,1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9	105304 2020 09 1 800 001799	121111-*****	(주)재**하**텍	고잔동 709-14 외 1건 (면적 1,288.95㎡)	5,423,5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0	105304 2020 09 1 800 001967	124611-*****	(주)한**브**에**	고잔동 657-8 (면적 1,824.60㎡)	6,744,7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1	105304 2020 09 1 800 002148	135511-*****	주**회**신**아**릴	고잔동 642-1 (면적 3,294.50㎡)	11,593,9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2	105304 2020 09 1 800 002214	170111-*****	(주)에**케**티**지**어**	고잔동 690-16 1동 113호 외 19건 (면적 152.34㎡)	564,0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3	105304 2020 09 1 800 002374	110111-*****	주**회**후**즈**마**센**	고잔동 648-2 1동 126호 외 4건 (면적 .00㎡)	101,3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4	105304 2020 09 1 800 002412	120111-*****	(주)스**스**토**이**	고잔동 648-1 1동 417호 외 3건 (면적 25.32㎡)	105,8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5	105304 2020 09 1 800 002448	120111-*****	주**회**주**테**원	고잔동 705-10 (면적 629.30㎡)	2,100,7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6	105304 2020 09 1 800 002602	120111-*****	주**회** **주	고잔동 736-8 (면적 529.70㎡)	2,057,1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7	105304 2020 09 1 800 005414	430506-*****	공**식	고잔동 653-7 (면적 1,335.10㎡)	4,936,3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28	105304 2020 09 1 800 010109	520401-*****	문**호	논현동 450 2동 208호 (면적 208.60㎡)	1,265,4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29	105304 2020 09 1 800 010576	521116-*****	이**순	논현동 450 2동 206호 (면적 137.50㎡)	754,1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30	105304 2020 09 1 800 010597	521201-*****	나**영	고잔동 630 2동 121호 외 1건 (면적 41.90㎡)	303,4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31	105304 2020 09 1 800 014604	571001-*****	민**기	고잔동 631 2동 134호 외 1건 (면적 45.80㎡)	341,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32	105304 2020 09 1 800 020146	620524-*****	성**모	고잔동 630 1동 105호 외 2건 (면적 61.40㎡)	444,7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33	105304 2020 09 1 800 020561	621021-*****	이**준	고잔동 631 1동 141호 외 1건 (면적 45.80㎡)	341,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34	105304 2020 09 1 800	651024-*****	이**인	고잔동 648-2 1동 801호 외 1건		수령거부 수취인	20201031

	023308			(면적 34.34㎡)	148,990	부재	
335	105304 2020 09 1 800 025757	681112-*****	차**수	논현동 434-10 3동 305호 (면적 52.08㎡)	149,4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36	105304 2020 09 1 800 031191	741222-*****	이**준	고잔동 633-1 1동 117호 (면적 50.62㎡)	300,5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37	105304 2020 09 2 710 000702	690328-*****	이**주	고잔동 202-2 (면적 298.00㎡)	1,287,980		20201031
338	105304 2020 09 2 710 000792	120111-*****	한**에**앤**주**회**	고잔동 365-1 (면적 3,377.60㎡)	12,039,110		20201031
339	105304 2020 09 2 800 000613	110111-*****	(주)코**코**산**탁	고잔동 648-1 1동 8101호 외 104건 (면적 964.16㎡)	17,360	고지서 미송달	20201031
340	105305 2020 09 1 510 203048	641016-*****	김**녀	구월동 201-97 1동 301호[2기분]	54,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41	105305 2020 09 1 510 203900	591207-*****	김**례	구월동 258 팬더 7동 811호[2기분]	132,5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2	105305 2020 09 1 510 207460	810218-*****	전**연	구월동 1128 802호[2기분]	104,0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43	105305 2020 09 1 510 208370	800926-*****	진**호	구월동 1133-4 더클래스Ⅱ-A동 506호[2기분]	141,0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4	105305 2020 09 1 510 208397	741222-*****	최**아	구월동 1133-4 더클래스Ⅱ-A동 1104호[2기분]	98,8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5	105305 2020 09 1 510 209720	651125-*****	김**용	구월동 1144-10 1동 1302호[2기분]	105,6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6	105305 2020 09 1 510 210468	421127-*****	김**자	구월동 1164-17[2기분]	61,9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7	105305 2020 09 1 510 211104	780123-*****	박**경	구월동 1197-2 대성빌리지(3동) 3동 502호[2기분]	69,3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8	105305 2020 09 1 510 211566	631023-*****	이**숙	구월동 1216-11 삼두빌라(E동) E동 301호[2기분]	61,6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49	105305 2020 09 1 510 325261	134811-*****	이**는**자**식**사	구월동 1485 구월아시아드선수촌2단지 202동 2802호[2기분]	209,1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0	105305 2020 09 1 510 325787	110111-*****	교**자**신**주**회**	구월동 1513 504동 503호[2기분]	235,4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1	105305 2020 09 1 510 326729	910119-*****	우**	구월동 1508 구월 유승한내들 퍼스티지 101동 2505호[2기분]	300,5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2	105305 2020 09 1 510 327603	590323-*****	강**연	구월동 1508 구월 유승한내들 퍼스티지 201동 101호[2기분]	529,3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3	105305 2020 09 1 510 327674	570817-*****	이**엽	구월동 1530 두플라스 707호[2기분]	59,3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4	105305 2020 09 1 510 332131	630425-*****	오**식	구월동 1510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102동 1704호[2기분]	390,820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355	105305 2020 09 1 510 332392	711226-*****	이**대	구월동 1510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315,1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01동 1502호[2기분]			
356	105305 2020 09 1 510 332477	741225-*****	김**선	구월동 1510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105동 1401호[2기분]	390,4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57	105305 2020 09 1 510 333286	811005-*****	이**경	구월동 1485 구월아시아드선수촌2단지 205동 206호[2기분]	341,2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58	105305 2020 09 1 510 333305	230111-*****	더**은*주**회**	구월동 1554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8단지 803동 402호[2기분]	230,0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59	105305 2020 09 1 520 194682	570625-*****	조**희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04동 1104호[2기분]	300,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0	105305 2020 09 1 520 194710	581221-*****	박**화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04동 1801호[2기분]	300,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1	105305 2020 09 1 520 194781	551204-*****	김**자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05동 1103호[2기분]	328,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62	105305 2020 09 1 520 194814	700615-*****	임**빈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05동 1804호[2기분]	331,7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3	105305 2020 09 1 520 195327	651103-*****	이**태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11동 1002호[2기분]	327,1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4	105305 2020 09 1 520 195635	480311-*****	김**남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14동 1502호[2기분]	300,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5	105305 2020 09 1 520 195640	671226-*****	김**숙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14동 1602호[2기분]	300,4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6	105305 2020 09 1 520 195680	750328-*****	김**일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301동 203호[2기분]	162,3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7	105305 2020 09 1 520 195819	610510-*****	김**숙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302동 1404호[2기분]	219,0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8	105305 2020 09 1 520 196856	600626-*****	최**환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402동 1501호[2기분]	348,0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69	105305 2020 09 1 520 196990	310315-*****	정**남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404동 703호[2기분]	315,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0	105305 2020 09 1 520 197277	560619-*****	이**욱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407동 1302호[2기분]	318,6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1	105305 2020 09 1 520 198950	820625-*****	박**희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103동 803호[2기분]	97,6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2	105305 2020 09 1 520 199026	610530-*****	김**수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104동 1101호[2기분]	358,1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3	105305 2020 09 1 520 199029	581020-*****	김**형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104동 1202호[2기분]	358,1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74	105305 2020 09 1 520 199030	790402-*****	김**혜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104동 1301호[2기분]	360,2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5	105305 2020 09 1 520 199336	641001-*****	주**라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107동 1302호[2기분]	342,9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76	105305 2020 09 1 520	610528-*****	최**영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204동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199917			1002호[2기분]	302,910		
377	105305 2020 09 1 520 200092	790409-*****	김**준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206동 1203호[2기분]	340,4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78	105305 2020 09 1 520 200122	580822-*****	정**숙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206동 1903호[2기분]	330,5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79	105305 2020 09 1 520 200656	630822-*****	강**모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1동 402호[2기분]	319,5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0	105305 2020 09 1 520 200860	881206-*****	최**식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3동 1101호[2기분]	322,3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81	105305 2020 09 1 520 200871	680725-*****	박**수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3동 1601호[2기분]	329,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2	105305 2020 09 1 520 201176	560910-*****	윤**서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7동 1501호[2기분]	329,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3	105305 2020 09 1 520 201180	730827-*****	김**태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7동 1701호[2기분]	329,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4	105305 2020 09 1 520 201189	580713-*****	정**순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307동 2102호[2기분]	329,8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5	105305 2020 09 1 520 201255	590720-*****	김**숙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401동 2001호[2기분]	321,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6	105305 2020 09 1 520 202168	870809-*****	오**정	구월동 24 롯데캐슬골드 2408동 1901호[2기분]	383,3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7	105305 2020 09 1 520 202659	750217-*****	조**환	구월동 70-17 희망 2동 605호[2기분]	77,8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8	105305 2020 09 1 520 202754	520525-*****	강**섭	구월동 70-26 해창(70-26) 1동 405호[2기분]	83,9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89	105305 2020 09 1 520 202848	560425-*****	양**희	구월동 70-33 해창(70-26) 3동 205호[2기분]	98,7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0	105305 2020 09 1 520 202875	620201-*****	맹**호	구월동 70-33 해창(70-26) 4동 103호[2기분]	92,3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1	105305 2020 09 1 520 204867	721206-*****	김**미	구월동 342-1 신세계 1동 308호[2기분]	89,7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92	105305 2020 09 1 521 205644	801218-*****	최**연	구월동 1086 NS파크타운 301호[2기분]	145,1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3	105305 2020 09 1 522 212791	110111-*****	주**회**무**화**탁	구월동 1276-4 하늘미소 501호[2기분]	88,8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4	105305 2020 09 1 522 212928	620103-*****	윤**구	구월동 1280-3[2기분]	59,5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95	105305 2020 09 1 522 213028	591015-*****	이**무	구월동 1287-4 경창맨션(101동) 101동 202호[2기분]	59,6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96	105305 2020 09 1 522 213396	470312-*****	이**이	구월동 1301-28[2기분]	212,2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7	105305 2020 09 1 522 214066	580102-*****	장**일	구월동 1320 보광하이츠빌 1동 502호[2기분]	69,6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398	105305 2020 09 1 522 329092	480117-*****	임**숙	구월동 1277-32[2기분]	772,8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99	105305 2020 09 1 522 334314	480610-*****	전**의	구월동 1277-37[2기분]	282,7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00	105305 2020 09 1 522 334328	480610-*****	전**의	구월동 1277-34[2기분]	159,1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01	105305 2020 09 1 530 222911	580425-*****	황**연	간석동 309-5[2기분]	307,8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2	105305 2020 09 1 530 223132	720602-*****	백**연	간석동 316-3 센트라움 102동 601호[2기분]	60,1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3	105305 2020 09 1 530 223133	720602-*****	백**연	간석동 316-3 센트라움 102동 602호[2기분]	60,5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4	105305 2020 09 1 530 223172	110111-*****	주**회**무**회**탁	간석동 318-1 세인트원 1동 202호[2기분]	114,4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5	105305 2020 09 1 530 223539	520201-*****	권**준	간석동 340-4[2기분]	407,09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406	105305 2020 09 1 530 224271	180111-*****	주**회** **든	간석동 408-1 다정한마을서해그랑블 101동 512호[2기분]	192,3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7	105305 2020 09 1 530 224407	490909-*****	강**천	간석동 411-2 골든힐1동 1동 502호[2기분]	69,2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08	105305 2020 09 1 530 225079	610327-*****	김**성	간석동 483-3 진영프라자 1동 603호[2기분]	62,2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09	105305 2020 09 1 530 226590	700421-*****	한**희	간석동 508-23[2기분]	445,7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0	105305 2020 09 1 530 226745	590523-*****	김**자	간석동 508-76[2기분]	360,2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1	105305 2020 09 1 530 226994	511125-*****	구**회	간석동 508-169 그린아트빌 1동 402호[2기분]	61,5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12	105305 2020 09 1 530 227112	710802-*****	김**현	간석동 514 성락 다동 207호[2기분]	75,8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3	105305 2020 09 1 530 227621	710802-*****	김**현	간석동 519-4 한진 4동 210호[2기분]	79,0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4	105305 2020 09 1 530 234247	820303-*****	곽**현	간석동 901-12 비잔티움 101동 502호[2기분]	96,5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5	105305 2020 09 1 530 329572	410209-*****	김**순	간석동 330-5[2기분]	327,0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6	105305 2020 09 1 540 308186	600904-*****	W*N* *I* *U*Y*M*E*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 108동 601호[2기분]	355,3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7	105305 2020 09 1 540 309206	920903-*****	서**호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 118동 803호[2기분]	360,1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8	105305 2020 09 1 540 310112	630411-*****	최**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 127동 2305호[2기분]	302,27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19	105305 2020 09 1 550 215585	820801-*****	이**미	간석동 34-5[2기분]	381,7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20	105305 2020 09 1 550 215646	600805-*****	이**숙	간석동 37-172[2기분]	102,0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1	105305 2020 09 1 550 216184	780904-*****	김**길	간석동 49-22 리젠시아 1동 501호[2기분]	101,6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22	105305 2020 09 1 550 218180	131411-*****	(주)수**이**배**션	간석동 108-1 씨엠씨레니티힐 1동 705호[2기분]	128,7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3	105305 2020 09 1 550 218349	110111-*****	교**자**신**주**회**	간석동 109-10 위브타운 1동 502호[2기분]	83,1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24	105305 2020 09 1 550 218740	580510-*****	엄**애	간석동 120-7 하이베리원 1동 202호[2기분]	86,0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5	105305 2020 09 1 550 219848	811228-*****	이**남	간석동 169-16 1동 202호[2기분]	64,8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6	105305 2020 09 1 550 235761	821128-*****	민**아	간석동 934 이삭 102동 510호[2기분]	114,5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27	105305 2020 09 1 550 324927	701219-*****	김**영	간석동 941 간석LH2단지 210동 801호[2기분]	239,3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8	105305 2020 09 1 551 222226	791023-*****	안**득	간석동 254-2 문화빌라 1동 202호[2기분]	58,2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29	105305 2020 09 1 551 223801	670929-*****	이**성	간석동 387 한국 1동 319호[2기분]	56,5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0	105305 2020 09 1 551 229033	660721-*****	정**영	간석동 616-6 103동 701호[2기분]	216,8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1	105305 2020 09 1 551 232032	740311-*****	이**희	간석동 893-1 우성 1동 1001호[2기분]	170,09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32	105305 2020 09 1 551 232869	551016-*****	김**임	간석동 893-1 우성 11동 307호[2기분]	97,0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33	105305 2020 09 1 551 235929	640203-*****	백**훈	간석동 935 풍림아이원 101동 1501호[2기분]	51,49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4	105305 2020 09 1 560 253926	591015-*****	이**무	만수동 935-7 더조은파크빌 1동 501호[2기분]	58,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35	105305 2020 09 1 560 256120	570428-*****	임**수	만수동 1005 주공8단지 801동 803호[2기분]	54,5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36	105305 2020 09 1 560 256221	561226-*****	김**영	만수동 1005 주공8단지 802동 301호[2기분]	62,9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7	105305 2020 09 1 560 256799	680227-*****	정**니	만수동 1005 주공8단지 805동 1211호[2기분]	54,5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8	105305 2020 09 1 560 328342	910121-*****	나**성	만수동 937-25 502호[2기분]	102,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39	105305 2020 09 1 570 241249	631128-*****	이**필	만수동 5-426 신동아 5동 909호[2기분]	104,3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40	105305 2020 09 1 570 241722	600825-*****	황**숙	만수동 5-458 현일(5-458) A동 302호[2기분]	65,8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41	105305 2020 09 1 570 250843	510306-*****	신**희	만수동 870-24[2기분]	141,2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42	105305 2020 09 1 570 311187	790115-*****	조**이	만수동 869-21 삼익플라주아파트 101동 1305호[2기분]	160,0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43	105305 2020 09 1 580	700126-*****	김**일	만수동 109-152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248484			신만수빌라(109-152) 1동 402호[2기분]	50,620	부재	
444	105305 2020 09 1 580 266705	750405-*****	김**택	만수동 1114 벽산 106동 203호[2기분]	142,14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45	105305 2020 09 1 580 267966	641217-*****	박**숙	만수동 1114 벽산 115동 2101호[2기분]	167,1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46	105305 2020 09 1 580 268017	710519-*****	조**	만수동 1114 벽산 116동 603호[2기분]	127,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47	105305 2020 09 1 580 268054	590330-*****	양**식	만수동 1114 벽산 116동 1006호[2기분]	132,5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48	105305 2020 09 1 580 323274	131411-*****	(주)수**이**배**션	만수동 839-41 한솔리치빌 303동 303동 201호[2기분]	86,5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49	105305 2020 09 1 580 329977	570808-*****	위**순	만수동 109-113 1동 101호[2기분]	358,3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50	105305 2020 09 1 581 242221	520504-*****	김**화	만수동 13 주공(13-0) 403동 1507호[2기분]	111,5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51	105305 2020 09 1 581 243674	510606-*****	김**례	만수동 13 주공(13-0) 420동 908호[2기분]	116,3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52	105305 2020 09 1 582 252810	650803-*****	정**영	만수동 905 효성상아 4동 1507호[2기분]	105,3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53	105305 2020 09 1 583 257659	811103-*****	김**환	만수동 1014 남동 103동 1302호[2기분]	121,2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54	105305 2020 09 1 583 258742	700925-*****	박**주	만수동 1025-4[2기분]	112,730		20201031
455	105305 2020 09 1 583 258815	600614-*****	이**영	만수동 1035-7[2기분]	304,5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56	105305 2020 09 1 583 258822	680801-*****	최**곤	만수동 1035-13[2기분]	274,9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57	105305 2020 09 1 583 259112	741005-*****	이**학	만수동 1036 진흥(1036) 5동 607호[2기분]	81,4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58	105305 2020 09 1 583 259537	570402-*****	김**식	만수동 1037 현대 104동 1702호[2기분]	193,3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59	105305 2020 09 1 583 261264	830512-*****	김**환	만수동 1043 만수주공10단지 1003동 107호[2기분]	82,3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0	105305 2020 09 1 583 261267	870502-*****	이**지	만수동 1043 만수주공10단지 1003동 110호[2기분]	82,3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1	105305 2020 09 1 583 261351	520216-*****	이**구	만수동 1043 만수주공10단지 1003동 1102호[2기분]	95,75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2	105305 2020 09 1 583 261749	720205-*****	김**섭	만수동 1044 뉴서울 103동 909호[2기분]	53,5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3	105305 2020 09 1 583 263471	420305-*****	이**숙	만수동 1048 금호 5동 1301호[2기분]	178,6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4	105305 2020 09 1 583 263622	450420-*****	김**선	만수동 1049 담방마을 101동 1108호[2기분]	81,3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5	105305 2020 09 1 583	960916-*****	최**기	만수동 1049 담방마을 102동		수령거부 수취인	20201031

	263725			404호[2기분]	76,090	부재	
466	105305 2020 09 1 583 264233	810207-*****	김**기	만수동 1049 담방마을 107동 102호[2기분]	70,87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7	105305 2020 09 1 583 264603	591015-*****	이**무	만수동 1078-15 성광주택(1078-15) 1동 101호[2기분]	60,3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68	105305 2020 09 1 650 276154	640928-*****	최**준	서창동 560-2 임광그대가 112동 1002호[2기분]	310,8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69	105305 2020 09 1 650 321508	701220-*****	서**원	서창동 654-3[2기분]	496,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70	105305 2020 09 1 650 321609	690113-*****	이**란	서창동 687-3 아페리온(A동-*71,B동-*72) 60472호[2기분]	81,4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71	105305 2020 09 1 655 313611	571204-*****	김**선	서창동 682 서창센트럴푸르지오 503동 2301호[2기분]	247,5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72	105305 2020 09 1 655 316066	720523-*****	정**재	서창동 699 서창퍼스트뷰 711동 1103호[2기분]	261,40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73	105305 2020 09 1 655 318336	731212-*****	장**욱	서창동 685 이편한세상서창 1002동 402호[2기분]	255,4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4	105305 2020 09 1 655 318803	810107-*****	표**기	서창동 685 이편한세상서창 1006동 601호[2기분]	261,4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75	105305 2020 09 1 660 278227	530805-*****	황**례	남촌동 320-2 풍림1차 102동 1701호[2기분]	148,0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6	105305 2020 09 1 660 279979	440401-*****	김**문	도림동 223-1[2기분]	227,70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7	105305 2020 09 1 660 279995	450710-*****	문**자	도림동 266-2[2기분]	310,1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8	105305 2020 09 1 660 281110	710115-*****	손**경	도림동 667-1 302호[2기분]	75,8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79	105305 2020 09 1 660 281299	680721-*****	이**순	도림동 675-2 아이원캐슬 1동 302호[2기분]	76,76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0	105305 2020 09 1 660 281960	760420-*****	B*T*A*O*i*N*R	도림동 651-1 도림아이파크 103동 1902호[2기분]	320,1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1	105305 2020 09 1 690 283986	600904-*****	최**희	논현동 549 한라 101동 114호[2기분]	80,3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82	105305 2020 09 1 690 289903	134111-*****	주**회**세**중**건**	논현동 597-4[2기분]	566,4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3	105305 2020 09 1 690 291381	600120-*****	나**은	논현동 601-1 별빛마을웰카운티 1006동 2003호[2기분]	321,0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84	105305 2020 09 1 690 293877	571015-*****	양**순	논현동 604-1 넷마을 신영지웰 902동 2501호[2기분]	654,35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85	105305 2020 09 1 690 293960	640426-*****	이**자	논현동 604-1 넷마을 신영지웰 903동 1901호[2기분]	305,47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86	105305 2020 09 1 690 294807	410128-*****	최**섭	논현동 609-2[2기분]	407,0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7	105305 2020 09 1 690 294827	670515-*****	이**락	논현동 615-3[2기분]	663,3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88	105305 2020 09 1 690 331366	780529-*****	최**정	논현동 592-27[2기분]	352,6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89	105305 2020 09 1 690 331653	600712-*****	한**자	논현동 660-17[2기분]	330,4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90	105305 2020 09 1 700 289851	691003-*****	임**현	논현동 588-3[2기분]	732,8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91	105305 2020 09 1 700 295612	590430-*****	김**선	논현동 618-1 논현신일해피트리 710동 402호[2기분]	300,66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492	105305 2020 09 1 700 295635	911219-*****	고**균	논현동 618-1 논현신일해피트리 710동 1501호[2기분]	327,0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93	105305 2020 09 1 700 295864	730505-*****	김**희	논현동 628-6[2기분]	463,1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494	105305 2020 09 1 700 297208	580815-*****	양**국	논현동 642-2 102동 404호[2기분]	97,61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95	105305 2020 09 1 700 297475	540327-*****	이**자	논현동 646-1 1114호[2기분]	92,63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496	105305 2020 09 1 700 331149	651024-*****	이**인	논현동 584-3[2기분]	228,9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497	105305 2020 09 1 700 331193	730820-*****	김**영	논현동 589-8[2기분]	307,46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498	105305 2020 09 1 700 331194	740125-*****	김**권	논현동 589-8[2기분]	307,46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499	105305 2020 09 1 700 331580	400202-*****	이**렬	논현동 628-5[2기분]	364,79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0	105305 2020 09 1 700 331590	600406-*****	리**페**로**	논현동 629-10[2기분]	432,30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501	105305 2020 09 1 710 298348	660918-*****	정**자	논현동 755-1 504동 1401호[2기분]	278,720	수령거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2	105305 2020 09 1 710 298456	660321-*****	당**영	논현동 755-1 505동 604호[2기분]	327,9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03	105305 2020 09 1 710 298462	520522-*****	조**호	논현동 755-1 505동 801호[2기분]	341,1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4	105305 2020 09 1 710 298682	681123-*****	김**정	논현동 755-1 506동 1602호[2기분]	311,1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5	105305 2020 09 1 710 298783	700707-*****	전**우	논현동 755-1 506동 3702호[2기분]	319,0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06	105305 2020 09 1 710 299155	730505-*****	김**희	논현동 755-4 한화에코메트로12단지 1201동 1601호[2기분]	342,3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07	105305 2020 09 1 710 300167	131411-*****	주**회**비**디	논현동 755-4 한화에코메트로12단지 1210동 2704호[2기분]	242,6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08	105305 2020 09 1 710	870826-*****	J*N*E*	논현동 765-1		수령인없음 수취인	20201031

	303350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01동 203호[2기분]	309,860	부재	
509	105305 2020 09 1 710 303431	120111-*****	(주)우**가	논현동 765-1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04동 204호[2기분]	309,8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0	105305 2020 09 1 710 303496	610408-*****	나**환	논현동 765-1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06동 306호[2기분]	340,22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1	105305 2020 09 1 710 303527	750602-*****	이**민	논현동 765-1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07동 405호[2기분]	440,1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12	105305 2020 09 1 710 303587	641225-*****	우**숙	논현동 765-1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10동 302호[2기분]	309,8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3	105305 2020 09 1 710 303641	700921-*****	함**봉	논현동 765-1 이안라운파미에하우스 114동 201호[2기분]	309,8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4	105305 2020 09 1 710 303771	670211-*****	염**호	논현동 766-1 902동 302호[2기분]	487,51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5	105305 2020 09 1 710 303785	580513-*****	김**환	논현동 766-1 902동 901호[2기분]	529,7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6	105305 2020 09 1 710 303813	620315-*****	임**숙	논현동 766-1 902동 2001호[2기분]	560,1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17	105305 2020 09 1 710 304262	520830-*****	김**영	논현동 766-1 904동 4602호[2기분]	386,21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518	105305 2020 09 1 710 304476	671223-*****	김**성	논현동 766-1 905동 4301호[2기분]	363,65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19	105305 2020 09 1 710 304636	540707-*****	윤**순	논현동 766-1 906동 2701호[2기분]	351,770	이사감 수취인 부재	20201031
520	105305 2020 09 1 710 304639	811209-*****	박**국	논현동 766-1 906동 2703호[2기분]	434,58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21	105305 2020 09 1 710 304767	550303-*****	최**숙	논현동 773-1 1001동 2601호[2기분]	691,450	수취인 주소,거소,영업 소불명 수취인 부재	20201031
522	105305 2020 09 1 710 305010	760412-*****	이**원	논현동 773-1 1003동 3002호[2기분]	452,7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23	105305 2020 09 1 710 305017	700516-*****	박**희	논현동 773-1 1003동 3201호[2기분]	355,0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24	105305 2020 09 1 710 305480	641119-*****	최**심	논현동 774-1 한화에코메트로11단지 1102동 401호[2기분]	323,6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25	105305 2020 09 1 710 305887	580523-*****	김**하	논현동 774-1 한화에코메트로11단지 1106동 1203호[2기분]	226,98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26	105305 2020 09 1 710 310450	510201-*****	김**돈	논현동 732-1 논현힐스테이트 101동 2101호[2기분]	386,83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27	105305 2020 09 1 710	690109-*****	이**의	논현동 732-1 논현힐스테이트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310566			102동 1401호[2기분]	381,550		
528	105305 2020 09 1 710 310801	720704-*****	송**정	논현동 732-1 논현힐스테이트 104동 401호[2기분]	321,90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29	105305 2020 09 1 710 321794	800910-*****	이**직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1101호[2기분]	425,4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0	105305 2020 09 1 710 321844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1702호[2기분]	506,0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31	105305 2020 09 1 710 321846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1703호[2기분]	506,0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2	105305 2020 09 1 710 321895	690314-*****	장**란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2401호[2기분]	435,7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3	105305 2020 09 1 710 321899	710123-*****	박**원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2403호[2기분]	516,3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4	105305 2020 09 1 710 321960	800910-*****	이**직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3301호[2기분]	448,8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5	105305 2020 09 1 710 321975	621228-*****	진**환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3501호[2기분]	448,86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6	105305 2020 09 1 710 322094	700422-*****	정**일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A동 1동 4904호[2기분]	457,32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7	105305 2020 09 1 710 322120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B동 2동 504호[2기분]	469,9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38	105305 2020 09 1 710 322141	820213-*****	박**훈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B동 2동 901호[2기분]	307,81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39	105305 2020 09 1 710 322199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B동 2동 1804호[2기분]	506,0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40	105305 2020 09 1 710 322215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B동 2동 2003호[2기분]	506,04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41	105305 2020 09 1 710 322270	770510-*****	이**태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B동 2동 2903호[2기분]	516,34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42	105305 2020 09 1 710 322413	621001-*****	민**일	논현동 751-1 에코메트로 더타워C동 3동 902호[2기분]	412,760	기타 수취인 부재	20201031
543	105305 2020 09 1 800 283887	820503-*****	최**재	논현동 448 논현2차푸르지오시티 1동 741호[2기분]	106,330	수령인없음 수취인 부재	20201031
544	105305 2020 09 2 560 001126	520410-*****	이**자	만수동 962-5 동호(962-5) 1동 201호[연납]	128,990		20201031
545	105305 2020 09 2 660 001153	700516-*****	김**수	도림동 651-1 도림아이파크 103동 1804호[연납]	269,910		20201031
546	105305 2020 09 2 660 001154	720608-*****	민**주	도림동 651-1 도림아이파크 103동 1804호[연납]	269,910		20201031
547	105305 2020 09 2 710 001149	750815-*****	주**복	논현동 756-1 한화꿈에그린 606동 3602호[1기분]	100,220	고지서 미송달	20201031
548	105305 2020 09 2 710 001150	750815-*****	주**복	논현동 756-1 한화꿈에그린 606동 3602호[2기분]	100,220	고지서 미송달	2020103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66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완료 및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신청사 이전 :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 임시청사 이전 :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 *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청사임을 병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2,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조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완료 및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 신청사 이전 : 구월1동, 간석2동, 서창2동
 - 임시청사 이전 :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청사임을 병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75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3, 5층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서창동)
남촌도림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 3층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967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지급대상의 변경 : (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 규정 : (안 제2조)
-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금액 규정 : (안 제5조 및 제6조)
- 장학생의 지급방법 규정 : (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참고사항

- 남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의 변경 : (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 규정 : (안 제2조)
-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금액 규정 : (안 제5조 및 제6조)
- 장학금의 지급 방법 규정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중·고교 학생으로 제한한 내용 삭제로 대학생 지급 가능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남동구 관내 통장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통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자녀중 종전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녀와 나머지 다른 자녀도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후순위로 조정하여 선발한다.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968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선발 평가기준의 규정 :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3,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발 평가기준의 규정 :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중·고교 학생으로 제한한 내용 삭제로 대학생 지급 가능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통·반장 자녀 장학금”을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을 “통장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통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구”를 “남동구”로, “장학생의 보호자”를 “통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남동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남동구 통 · 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u>조례 시행규칙</u>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u>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u>통 · 반장 자녀 장학금</u>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u>통장 자녀 장학금</u> (이하 “ <u>장학금</u> ”이라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u>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 ----- <u>통장은</u> ----- ----- -----.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u>구청장</u> 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 ----- ----- <u>남동구청장</u> (이하 “ <u>구청장</u> ”으로 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u>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u>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u> <u>생의 보호자</u> 에게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 <u>남동구</u> ----- <u>통장</u> -----.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신청자(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생 : 학년 학과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3. 신청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비 고

4. 첨부서류

- 장학생 성적증명서 등

남동구 20 학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동 통장)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신청자(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신청자와의 관계 :

3. 확인사항

통 장 근속연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년	통장상훈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비고
년	여 / 부	등급 등 기재	0학년 (0학년제)	00상	여 / 부 (금액 기재)	

4. 동장 의견

20 년 월 일

동 장 (직인)

【 별표 】 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규칙 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가정 형편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 년	통장 표창
100	30	10	30	2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근속연수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5	20	15

나. 가정 형편

가정형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미해당
점 수	10	0

다. 학업성적 또는 특기

신입생	고 교 졸업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검정고시 출 신 자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재학생 복학생	평점	4.5 이상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등급	A+	A0	B+	B0	C+
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라. 학년

점수산정 방법	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학생의 학년}}{\text{해당학과 학년제}} \times 20\text{점}$

마. 통장 표창

훈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점수	10	9	8	7

[참고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현행		개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75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라5070외 7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20. 10. 7.(목) ~ 10. 22.(목)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20년 10월 7일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0년 9월분) 공시송달내역

순 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 소
1	**라5070	김*환	2020-09-14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다동 ***호 (구월동, **빌라)
2	**구4242	홍*훈	2020-09-1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 (논현동)
3	**오4376	노*래	2020-09-2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 ****호 (논현동, ****시티)
4	**모3239	오*철	2020-09-2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 ****동 ****호 (서창동, *****)
5	**너1986	방*주	2020-09-24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만수동, *****)아파트)
6	**우6415	이*문	2020-09-24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
7	**러6979	한*빈	2020-09-24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 (간석동, ****빌라)
8	**나8780	윤*학	2020-09-29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 (간석동, **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돌산마루2호 공영주차장 외부 주차구획 일부 폐지 및 헨스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공영노외주차장 외부 주차구획 일부 폐지 및 인도와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한 헨스 설치를 예고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돌산마루2호(간석동 37-6) 공영주차장 외부 주차구획 일부폐지 및 헨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목적

- 돌산마루2호 공영유료주차장(간석동 37-6) 주변 거주자 및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 공영노외주차장 외부에 위치한 주차구획 일부를 폐지하고 인도와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한 헨스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행정예고의 대상

- 돌산마루 2호 진입로 옆 주차구획 5면 및 인도경계(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28.(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0. 10. 8. ~ 2020. 10. 28.(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5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돌산마루2호(간석동 37-6)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일부폐지 및 휠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돌산마루2호(간석동 37-6)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일부폐지 및
휠스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돌산마루2호 공영주차장(간석동 37-6)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78호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명칭 및 개정사항 반영
- 성인지 통계 작성에 관한 조항 신설
- 운영하지 않는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로 대체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조항 신설
- 위원회 구성 규정의 단서조항 신설
-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 대체 조항 신설 및 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여성가족과

○ 연 락 처 : 전화 453-5863 FAX 453-5869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모든 영역”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협력”을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7조 앞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삭제한다.

제9조 앞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중 “영유아 교육”을 “영유아 보육”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 앞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하고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자문·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u> ----- -----.
제3조(정의) 1.·2. (생략)	제3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 <u>성별영향분석평가</u> ”란 「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 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가법</u> 」 ----- ----- ----- ----- ----- -----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구민은 <u>관련법령</u>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u>협력</u> 하여야	② ----- <u>관련 법령</u> ----- ----- ----- ----- <u>협력</u> 하여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삭 제>

<삭 제>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
-----.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① -----

-----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

-----.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

② (생 략)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5.(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설치) ①-----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 5.(현행과 같음)

<삭 제>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
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생 략)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
동하는 단체 종사자 또는 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4. 남동구 여성단체 대표

제26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
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
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
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삭 제>

<삭 제>

<삭 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
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
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
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
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
다.

제31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위
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

<삭 제>

<삭 제>

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장 양성평등기금

<삭 제>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남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삭 제>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삭 제>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 <삭 제>

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삭 제>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삭 제>

<삭 제>

<삭 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11조의2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1. 20.] 제21조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82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
- 특수규격봉투(불연성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도입
-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제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과 관련된 규정 마련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2. 주요내용

- 불연성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봉투별 무게 제한 추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
-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정 마련
- 인천시 내 봉투가격 동일 군·구간 스티커 부착없이 종량제봉투 사용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합 세부요건 마련
-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2552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비
- 불연성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에 대한 구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규격봉투(불연성마대) 제작을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을 제한하여 수거원의 근골격계 부담 완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보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정비로 예산낭비 방지
-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로 청소분야 재정자립도 제고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합 세부규정 정비로 민원발생 여지 사전차단

☐ 주요내용

- 불연성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 봉투별 무게 제한 추가(안 제9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 마련(안 제2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정 마련(안 제13조)
- 인천시 내 봉투가격 동일 군·구간 스티커 부착없이 종량제 봉투 사용(안 제13조)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합 세부요건 마련(안 제18조)
-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 반영 (별표 5)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를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연성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11조제1항 본문 중 “쓰레기 규격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계약해지”를 “대행계약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대행계약자”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의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

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미근무 근로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봉투 및 가정사업계처리용 봉투”를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봉투”로 하며, “가정사업계”를 “가정사업계폐기물”로, “제작한다”를 “제작하고, 특수 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제작한다”로 한다.

5.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별도 소각용으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6. 특수규격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 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제1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을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투용량”을 “용량”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재사용 봉투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본문 중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각각 “재사용 봉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을 “(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판매소임”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후단 중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각각 “공공용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량제봉투에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를 “종량제 봉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통일된 인천광역시 내 군·구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판매소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 중 “규격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 규격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을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종량제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영 제38조의4”로, “부과기준에”를 “부과기준을”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을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특수규격봉투의 가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구분	2020~2024년	2025년 1월 1일부터	용도
5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ℓ	1,850	2,17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100ℓ	3,710	4,32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30ℓ	2,350	2,35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60ℓ	4,700	4,70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15kg)			
125ℓ	7,870	7,870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32kg)			
50ℓ (13kg)	5,500	5,500	특수규격봉투

비고 :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가내 수공업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 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5. (생략) 6. “적환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5. (현행과 같음) 6. -----이란 ----- ----- ----- ----- ----- -----. 7.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③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3.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

1. -----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2. -----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

3. ~ 5. (현행과 같음)

6. 불연성생활폐기물은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 또는 구청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② (현행과 같음)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

----- 종량제 봉투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

리의 대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 3.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 계획, 기술력향상계획, 경영합리화 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리의 대행)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대행계약해지-----

9. · 10. (현행과 같음)

② -----
-----.

1. ----- 3년-----.
다만,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 생활폐기물처리업자-----

-----.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

<신 설>

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의 경우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미근무 근로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및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로 구분하며,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재사용 봉투-----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특수규격봉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생략)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신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분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투-----.

1. (현행과 같음)

2. 재사용 봉투-----

5.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별도 소각용으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현행과 같음)

3. -----

6. 특수규격봉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 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② 종량제 봉투-----

폐기물 전용봉투는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지방서에 의
하며,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적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
로 제작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
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
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
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
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
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
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
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
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
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사
용 봉투-----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

----제작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노
란색으로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
-----.

② -----

----- 종량제 봉
투 ----- 용량-----

-----.

③ -----

----- 종
량제 봉투 -----

-----.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

④ ----- 종량제 봉투 -----

----- 종량제 봉투 -----

-----.

⑤ ----- 종량제 봉투 -----

-----.

제15조(재사용 봉투 제작) ① -----

----- 재사
용 봉투 -----

-----.

② ----- 재사용
봉투 -----

-----.

③ ----- 재사용 봉투 -----

-----.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2. (생략)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 봉투-----

-----.

1. 2. (현행과 같음)

3. 종량제 봉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

-----.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

② ----- 판매소임-----

-----.

③ -----종량제 봉투-----

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이하 “도시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에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필요한 -----.

④ 공공용 봉투-----

--.

⑤ -----

-----공공용 봉투-----
-----.

⑥ -----
-----종량제 봉투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통일된 인천광역시 내 군·구 전·출입자에 한해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를 -----
-----.

제18조(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

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집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판매소-----
-----.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
-----종량제 봉투-----

-----.

1.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제봉투의 공급을 도시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
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생략)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
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
견 시 신고

6.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
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생략)

② (생략)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
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 규격봉
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
였을 때

-----.

2. 종량제 봉투-----

3. (현행과 같음)

4. -----종량제 봉투---

5. --- 종량제 봉투 -----

6. 종량제 봉투 -----

7. -----
----- 종량제 봉투-----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

-----.

1. -----
---- 종량제 봉투-----

2. -----종량제
봉투 -----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4. (생략)

② (생략)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
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
서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 유통
· 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5조(과태료 부과 · 징수 등) ① 구
청장은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

3. ----- 종량제
봉투-----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①

----- 종량제
봉투-----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종량제 봉투-----
-----.
----- 범위-----
-----.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

----- 범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 부과 · 징수 등) ① -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33조(권한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제1항의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 감면

2. ~ 8. (생 략)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38조의4----- 부과기준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권한위임) -----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1. -----종량제 봉투-----

2. ~ 8.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얻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은 별표 5와 같다.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9. 4. 8.)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판매수수료: $\{(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 \times \text{판매 수수료 효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 효율})\}$ 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 - 1985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추가 : (안 제4조 제1항 및 제7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기준 명확화 :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 (안 제8조 제1항)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 입찰제도 도입 : (안 제9조 제1항)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 : (안 제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4, FAX 453-27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추가 : (안 제4조 제1항 및 제7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기준 명확화 :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 (안 제8조 제1항)
-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 입찰제도 도입 : (안 제9조 제1항)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 : (안 제9조 제3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을 “주택 및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을”을 “공동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정한자”를 “규정한 자”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경우와”를 “각 목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안등, CCTV”를 “보안등”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의 경우와”를 “목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교체를 포함한다”를 “교체하여야 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담장·옹벽·축대·보안등)”을 “(담장·옹벽·축대·단지 내 보안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함”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CCTV 설치 및 보수(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한정한다”를 각각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경우와”를 “목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지원기준) 규정에”를 “지원 기준)을”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

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단, 보조금은 재료비에 한정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연 1회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이하”를 “이하”로, “자문단의”를 “자문위원의”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있다”를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을 “현장조사 및 별표 4(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로,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를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반환·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9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 를 “(보고, 검사, 정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 을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5호 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6호 서식” 을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완료(완공)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수행상황 파악 및 사업완료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대조·검토 등을 확인 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30	7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 사업의 경우는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중앙정부, 인천시 등과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30	70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	70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0	70	
5.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0	70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0	7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 포장	50	50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50	50	
3.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하여야 함	50	50	
4.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 단지 내 보안등 등)의 유지·보수	50	50	
5. 다세대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 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50	50	
6.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 한정함)	50	50	
7.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는 제외함)	50	50	
8. CCTV 설치 및 보수(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50	50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50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별표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7조의2 관련)

1. 자문위원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 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표4]

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

(제8조 제1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50세대 미만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5)	■ 30년 이상 경과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5 12 9 6 3	
	보조금 지원 횟수(15)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이상 지원	15 12 9 6 3	
	관리 투명성(5)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2 2 1	
	시책이행(5)	■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2 2 1	
정성 평가 (심사 위원) 30점	긴급성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2), 우수(모범)단지 선정(3)	+5이내	
감점		■ 3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2), 지원사업 부실 사례(3)	-5이내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가 동일점수일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주택</u>(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u><후단 신설></u>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주택</u>을 말한다. 3. (생략)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u>규정한자</u>를 말한다. <u>제2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u>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u><삭 제></u> 제2조(정의) ----- ----- <u>뜻은</u> ----- ---. 1. ----- ----- <u>주택</u> <u>및 시설</u>----- ----- <u>.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u> 2. ----- ----- -- <u>공동주택을</u> ----- -----. 3. (현행과 같음) 4. ----- ----- <u>규정한 자</u>----- ---. <u><삭 제></u>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나. ~ 바. (생략)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1. -----

----- 각 목과 -----.

가. -----

----- 보안등-----

나. ~ 바. (현행과 같음)

<삭 제>

2. -----

----- 목과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교체하여야

함.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보안등)의 유지·보수.

마.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바. (생략)

사.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아.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는 제외한다)

<신설>

자. (생략)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

라. -----(담장·옹벽·축대·단지 내 보안등)-----
-.

<삭제>

바. (현행과 같음)

사. -----
----- 한정함---

아. -----

----- 제외함---

자. CCTV 설치 및 보수(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차. (현행 자목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한정함

다. _____

 - 한정함 -

4. -----
----- 목과 -----
-----.

가.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별표 1
----- 지원기준)을 -----

별표 2-----

----- . <단서 삭제>

----- . 이 경우 별표 2의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
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지원
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

<신 설>

⑥ (생 략)

제6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7조(지원신청) ① (생 략)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단, 보조금은 재료비에 한정함)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지원의 우선순위) ① ----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
 동주택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년
1회에 한하며, 보조금을 지원받
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
다.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
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
며, 자문단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신청은 공동주택별로 연
1회로 한다.

제7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

-----이 하-----

--- 자문위원의 -----
----- 별표 3-----.

② -----
----- 별지 제1호서식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8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결정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결정) ① -----

----- 현장조사 및 별표 4(공동주택 보조금 서면평가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
----- 결정-----
--.

②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반환·완료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9조(보고, 검사, 정산 등) ①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관리

제3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조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확인 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심의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7조(준용) -----

----- 따른다.

<삭 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986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장법」 개정 관련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관련사항 신설(안 제25조2, 안 제25조의3)
- 주차장 개방 보조 대상 및 지원 확대
(안 제27조제3호, 안 제28조제2항, 별표 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반환규정 신설(안 제29조제1항제3호)
- 용어정비(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제4호, 안 제12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 상위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또는 준용
(안 제4조제2항제4호~제6호, 안 제13조제2항,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10.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 연 락 처 : ☎ 453-2683, FAX 453-2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주차장법」 개정 관련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관련사항 신설(안 제25조2, 안 제25조의3)
- 주차장 개방 보조 대상 및 지원 확대
(안 제27조제3호, 안 제28조제2항, 별표 8)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반환규정 신설(안 제29조제1항제3호)
- 용어정비(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제4호, 안 제12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 상위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 또는 준용
(안 제4조제2항제4호~제6호, 안 제13조제2항, 안 제3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3항 내지 제15항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제1항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호다목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차량을”을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용대상차량”을 “이용대상 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체납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4조를 따른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량이”를 “자동차가”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25조의2제

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방 절차 및 지

원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

나.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28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방법)” 을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 을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보조금” 으로, “바에” 를 “바를”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제28조 관련)

1. 내집안 주차장 설치 비용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의무유지기간
대문 · 담장 철거 후 주차장(경형 · 일반형) 설치 시	· 담장(대문) 철거 · 주차면 조성, 조경시설 · 개방형(수목)담장, 투시형 대문 · 방범시설(방범창, 현관문, 무인방범시스템)	5년
아파트 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주차 노면 정비 : 주차장 포장보수, 주차구획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 내 분리시설(경계석, 웬스, 조경시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방범시설	5년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주차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2년
기존 개방 건물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2년
○ 기준개방시간 : 평일 · 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 · 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건축물 사용(또는 영업)시간 외 유희시간에 따라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학교 부설주차장 비용 지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의무개방기간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소규모 주차장 추가설치 포함)	기존 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용 또는 개방을 위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비용 최대 20,000만원 범위 내 지원 ○ 기준개방시간 : 평일 · 토요일 19시~익일 7시 30분, 일요일 · 공휴일 24시간 (※ 개방시간은 남동구청장과 협의로 조정 가능)	5년
학교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운영될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20년
○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u>	<삭 제>
5. <u>공영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u>	<삭 제>
6. <u>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u>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1. -----

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나. (생략)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라.·마. (생략)

2. (생략)

3. 요일제 참여 차량: 100분의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면제

가.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자동차 -----

라.·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자동차: -----

4. -----

가. -----

차량: 1년간

나. (생략)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0분의 50 감면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100분의 5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8. ~ 12. (생략)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공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

자동차: --

나. (현행과 같음)

5. -----

----- 자동차 -----

6. -----

자동차-----

7. -----

-- 자동차: -----

8.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

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③ (생략)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되, 금액은 제1항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자동차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용대상 자동차-----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체납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4조를 따른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생략)

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신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동차가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신 설>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
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
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
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
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
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
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
임은 제25조의2제2항에도 불구
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
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
을 통해 결정한다.

제27조(보조의 대상)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가.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방 절차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

나.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2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제28조(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보조금-----

바를 ----.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

② · ③ (생 략) <u>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u>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u> <u>다.</u>	<u>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이행하</u> <u>지 아니할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참고자료]

□ 주차창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창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5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39 (논현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39 (논현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39 (논현동)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9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270번길 39 기초구간에위치하여39를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6번길 20 (남촌동)	20091116	남촌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9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촌동로26번길 20 기초구간에위치하여20을건물번호로 부여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7-15 (서창동)	20140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009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158번길 7-15 기초구간에위치하여7-15를건물번호 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70번길 39 (논현동)	2020.9.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우성귀금강(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76-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6번길 20 (남촌동)	2020.9.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56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표시 번호	면 적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218,947	100.0	
소 계	141,062	64.5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71,979 (73,668)	-	-	-	-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2	7,041	123,766	5	3,059	58,541	13	2,280	30,732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	-	-	-	1	343	10,098	1	1,070	26,950
기정	중로	7	3,994	73,401	2	2,763	55,581	4	734	11,010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	3	296	2,960	8	1,203	9,624	2	135	733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 간선	343	논현동 1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산 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 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 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 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 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 21-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 도로	110	대3-76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 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 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0	대3-76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 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 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 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0	대로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 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 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 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 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 도로	79	소2-9	소(소래) 2-7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 도로	204	소2-9	소(소래) 3-2	일반 도로	인고 제2011-225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 도로	31	중1-302	소(소래) 2-7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4	논현동111-10	중1-302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 공원 중복 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111-36 일원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9 일원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3,387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주차장③은 소공원① 전체 4,628㎡ 중 3,387㎡ 중복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일반 광장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역사 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 3-10호선 중복결정
변경	②	소래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28	감) 18	4,610	인고 제2011-225호	지하주차장③, 우수저류조① 일부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②은 지하주차장③ 3,387㎡ 전체중복, 우수지① 전체 1,639㎡ 중 717㎡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 634㎡ 전체 중복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소래소공원	▶ 면적변경 · 면적: 4,628㎡ → 4,610㎡ (감 18㎡)	▶ 분할 측량 결과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8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2	1,872.9	인고 제2011-225호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1	2,677.8	인고 제2011-225호	

(4)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 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 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 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 일원	1,639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①은 소공원① 전체 4,628㎡ 중 717㎡ 중복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하수도	남동구 논현동 66-104 일원	494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32,753	-			32,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IBL	10,236	1	109-202대	160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59답	20				
			소계	530				
		5	109-157대	623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9	109-164대	17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69대	140				
			소계	314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70대	139				
			소계	32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09-151답	142				
			소계	330				
		14	109-152답	18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220답	130				
			소계	319				
		15	109-153답	214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09-221답	129				
			소계	343				
		16	109-166대	683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9	109-70대	198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7대	78				
			소계	1,19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55대	10			
			소계	118			※ 필지수 : 2개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9전	1			
			소계	242			※ 필지수 : 4개
		도로	111-14도	114	※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8도	3				
		소계	518	※ 필지수 : 10개			
주 2BL	5,031	1	109-19주	857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244대	18			
		소계	1,726	※ 필지수 : 4개			
		7	109-177답	364	■ 공동개발 지정		
		8	109-42대	159			
			109-181전	2			
소계	161	※ 필지수 : 2개					
9	109-101답	161					
주 3BL	2,007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4	109-140대	135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09-246대	17			
			소계	152			※ 필지수 : 2개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110-1대	230			
			소계	276		※ 필지수 : 2개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111-96대	182			
			소계	221		※ 필지수 : 2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3BL (계속)	(2,007)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4개			
			109-58답	36				
			110-3대	165				
			110-5대	41				
			소계	287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7대	177				
			111-98대	28				
소계	215							
주 4BL	3,948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235대	326				
			109-172답	48				
			소계	399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80대	20				
			소계	437				
		3	109-145대	43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09-146대	41				
			109-147대	644				
			소계	716				
		6	109-58답	29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59답	271				
			소계	300				
		7	110-2대	31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8	111-101대	11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5개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3도	5				
			111-5도	1				
			소계	337				
		9	111-98대	72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111-99대	258				
			111-100대	135				
			소계	465				
주 5BL	4,714	1	109-118대	104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2개			
			109-135답	7				
			소계	111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6개			
			68-17대	110				
			68-18대	149				
			68-84전	1				
			109-36대	431				
			109-176대	739				
			소계	1,556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 필지수 : 3개			
			68-82전	415				
			68-83전	670				
			소계	1,22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주 5BL (계속)	(4,714)	4	66대	405	
		5	66-44대	331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68-78대	167	
			68-79대	1	
			소계	188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68-75종	497	
			소계	654	
		도로	68-19도	207	※ 비건축 부지
109-122도	40				
소계	247				
주 6BL	6,817	1	68-20종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5답	4	
			소계	2,435	
		2	68-20종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소계	137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소계	191	
		4	66-39대	379	
		5	68-24전	345	
		6	68-25전	198	
		7	68-39전	266	
		8	68-40전	317	
		9	68-26전	66	■ 공동개발 지정
			68-33전	250	
			68-37전	115	
			68-50도	4	
소계	435				
10	109-149대	751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 비건축부지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5,998.9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98.9	1	810대	25,998.9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523	준주거지역			
준 1BL	6,286	1	111-264대	20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7Lot ② 준1BL 8~9Lot ③ 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3	111-245대	200				
		4	111-246대	201				
		5	111-247대	200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소계		410	※필지수 : 2개			
		7	111-250대	210				
		8	111-8대	356				
		9	111-487대 ※오기정정	171	■ 공동개발 지정			
			111-492대 ※오기정정	76				
			소계	247				※필지수 : 2개
		10	111-154대	293				
		11	111-259대	297				
		12	111-263대	456				
		13	111-261대	603				
		14	111-256대	580				
		15	111-257대	478				
		16	111-258대	454				
17	111-158대	273						
18	111-260대	588	※ 비건축부지					
준 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2~3Lot ② 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 지정			
			66-18잡	161				
			소계	1,038				※필지수 : 2개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2BL (계속)	(8,939)	22	111-229대	48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 비건축부지		
		25	111-231도	436	※ 비건축부지		
준 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112-1대	181	■ 공동개발 지정		
			112-2도	63			
			소계	1,651	※필지수 : 3개		
		3	111-56대	2			
			111-161대	519			
			111-173도	225	■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8			
			111-176대	223			
			소계	977	※필지수 : 5개		
준 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2	111-161대	24			
			111-173도	64			
			111-176대	1	■ 공동개발 지정		
			111-179대	383			
			111-235대	155			
			소계	627	※필지수 : 5개		
		3	111-173도	130			
			111-176대	4			
			111-180대	343	■ 공동개발 지정		
			111-235대	82			
			소계	559	※필지수 : 4개		
		4	111-56대	74			
			111-169대	183			
			111-170대	658	■ 공동개발 지정		
			111-173도	83			
			111-176대	73			
			소계	1,071	※필지수 : 5개		
		5	111-57대	157			
			111-166대	9			
			111-171대	34			
			111-172대	105	■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166			
			111-175대	26			
			소계	497	※필지수 : 6개		
준 5BL	5,629	1	111-183대	1,71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2	111-301창	1,316			
			111-238대	2	■ 공동개발 지정		
			소계	1,318	※필지수 : 2개		
		3	111-197대	13			
			111-239대	63			
			111-241대	28			
			111-242대	6	■ 공동개발 지정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소계	1,707	※필지수 : 7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5BL (계속)	(5,629)	4	111-232대	41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5	111-244대	133			
		6	111-233대	110	※ 비건축부지		
		7	111-236도	228	※ 비건축부지		
준 6BL	251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11-330대	2			
			소계	251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계	53,077	-			일반상업지역	
상 1BL	1,5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3대	502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9대	7		
			111-457전	5		
			소계	759	※필지수 : 10개	
		2	111-24대	337		
		3	111-36철	8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3개
			111-54전	308		
			111-55대	31		
			소계	428	※필지수 : 3개	※획지수 : 3개
상 2BL	9,141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6-58제	5		
			111-38대	258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2BL (계속)	(9,141)	1	111-120대	46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3대	14		
			66-59도	10		
			소계	3,274		
		2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322대	95		
			소계	3,072		
		3	66-5대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도	1		
			소계	2,795		
상 3BL	18,385	1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6대	120		
			소계	1,910		
		2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53대	327		
			111-136대	99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6대	4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3BL (계속)	(18,385)	2 (계속)	111-347대	101	■공동개발 지정 (계속)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68대	150		
			소계	2,048		
		3	66-41제	335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9도	130		
			소계	2,103		
		4	111-149대	61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93대	62		
			소계	912		
		5	66-19도	15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93대	2		
			소계	646		
		6	66-41제	398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6대	85		
			소계	1,108		
		7	66-24잡	9,658		
상 4BL	6,797	1	111-11대	3,945	-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소계	3,945		
		2	111-151대	1,113	■공동개발 지정	
			111-155대	1,739		
			소계	2,8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상 5BL	5,833	1	111-143대	2,745	■공동개발 지정 -상5BL+상6BL ※전체 공동개발 시에만 가능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152대	264			
			소계	3,009			
		2	111-147대	1,048	■공동개발 지정		
			112-2도	3			
			112-3대	515			
			소계	1,566			
		3	111-73대	7	■공동개발 지정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70대	57			
			소계	1,258			
상 6BL	2,519	1	111-71대	127	■공동개발 지정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가구간 공동개발 권장
			111-72대	3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146대	257			
			소계	932			
		2	111-37대	80	■공동개발 지정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146대	273			
			소계	808			
		3	111-37대	473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2대	63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66대	83			
			소계	779			

주1) 상5BL, 상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상 7BL	8,936	1	111-70	63	■공동개발 지정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9대	61		
			111-90대	73		
			111-91대	69		
			111-92대	79		
			111-93대	56		
			111-94대	112		
			111-148대	255		
			111-398대	225		
			111-423도	312		
			소계	3,089	※필지수 : 18개	
		2	111-58대	188	■공동개발 지정	
			111-59대	240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8대	364		
			111-69대	317		
			111-70대	16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67대	256		
			111-193대	2		
			111-194도	127		
			111-374대	60		
			111-431대	78		
			소계	3,289	※필지수 : 20개	
		3	111-162대	357	■공동개발 지정	
			111-163대	501		
			111-164대	456		
			111-167대	31		
			111-193대	789		
			111-253대	189		
			111-431대	235		
			소계	2,558	※필지수 : 7개	※획지수 : 3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정	A3	준 1~2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1~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 (1~11Lot) 준 2BL (2~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주거복합건축물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4	준 3~5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1Lot) 준 5BL (4~5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기정	A5	준 3~5BL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1~2Lot) 준 4BL 준 5BL (2~4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기정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기정	B2	주 2BL ~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80% 이하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 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 (순부담)	비 고
주 1BL ~ 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2, 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 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 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존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 ~ 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이상 (개설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 상3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률(%)	비 고
~ 10% 미만	1,000%	
10% 이상 ~ 20% 미만	950%	
20% 이상 ~ 30% 미만	900%	
30% 이상 ~ 40% 미만	850%	
40% 이상 ~ 50% 미만	800%	
50% 이상 ~ 60% 미만	750%	
60% 이상 ~ 70% 미만	700%	
70% 이상 ~ 80% 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 준2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률(%)	비 고
~ 10% 미만	500%	
10% 이상 ~ 20% 미만	480%	
20% 이상 ~ 30% 미만	460%	
30% 이상 ~ 40% 미만	440%	
40% 이상 ~ 50% 미만	420%	
50% 이상 ~ 60% 미만	400%	
60% 이상 ~ 70% 미만	380%	
70% 이상 ~ 80% 미만	330%	
80% 이상 ~ 90% 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분	완화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 -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 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 × 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I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최저 층수	최고 층수	비 고
주 1BL ~ 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5	-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10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 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 ~ 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 ~ 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 ~ 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대지) 경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계선	대로 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 2-74호선 변	2 ~ 3m	
	대로 3-76호선 변	2m	
	중로 1-90호선	2m	
	중로 1-302호선 변	1 ~ 5m	
	중로 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 3-2호선 변	2m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 2-9, 2-10호선 변	2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 층 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료 및 색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간조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 ~ 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 ~ 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중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 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위치지정
대지안조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 ~ 15m(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대로 1-20호선 변 대로 2-74호선 변 대로 3-76호선 변 중로 1-90호선 변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 4) : 1개소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 옥외광고물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호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① 총괄 시행지침
- ②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③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Ⅰ 총괄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중 "규제사항(지정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에 따라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들 사항을 준수 시 지침이 정한 보상(용적률 보상 : 용적률 완화)이 주어지기도 한다.
- ③ 본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해당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④ 본 지침의 일부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 ⑤ 획지 상호 간의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각 항목별로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⑦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이고 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지경계선"이라 함은 지적선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별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한 획지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획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상의 허용용도에 도 불구하고 지정용도 이외는 입지 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획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다. "불허용도"라 함은 그 획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라.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획지 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나.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하는 용적률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거나 대지내공지 및 보행공간의 조성,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녹지·광장·도로·하천·주차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지(공공시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라.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이라 함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바.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캐노피(canopy)구조"라 함은 도로나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건물의 2~3층 부분에 지붕을 연결

하여 도로의 상부를 덮는 것으로 벽이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나.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1/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다.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마.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8.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획지간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획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가구간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가구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합벽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연접하는 대지에서 상호간의 측벽을 공유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형태를 말한다.

9.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공개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가)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나)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라. "쌈지형 공지"라 함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휴게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지로서 최소면적 45㎡ 이상 확보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10.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 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추후 지역 여건 및 대지의 환경 등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설계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침의 조정)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이나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한 경우
 4. 당해 대지조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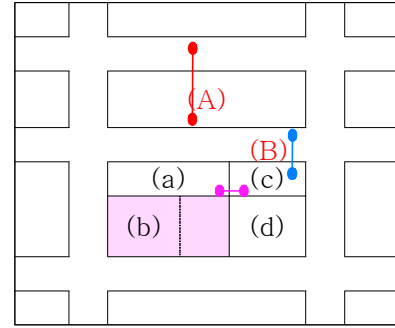
②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9조 (단위획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획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 a.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 b.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
 - c+d.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획지
 - A+B.가구간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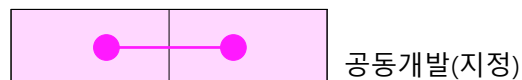


- ② 단위획지의 최소·최대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존 획지규모가 아래 최대 규모를 초과한 경우와 2개 이상 필지에 기 공동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및 가구간 또는 획지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획지계획 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분	최대획지규모(㎡)	최소획지규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00	
준주거지역	2,600	150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최대획지규모 적용제외
일반상업지역	3,500	150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최대획지규모 적용제외

제10조 (공동개발)

- ① 공동개발에 관한 규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필지 중 공동개발이 불가피한 필지
 2. 현재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로 공동개발이 된 경우
 3. 필지 규모가 지침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하의 필지가 발생한 경우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맹지형 필지가 발생한 경우
 5.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해 당해 필지가 과소 또는 부정형 필지화되어 건축행위가 곤란한 경우
- ② 도면표시



제2절 권장사항

제11조 (획지간 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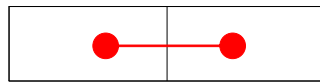
- ①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권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0㎡ 이내,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10,000㎡ 이내의 규모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도면표시



획지간 공동개발(권장)

제12조 (가구간 공동개발)

- ① 가구간 공동개발에 관한 권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로 구분된 일단의 가구를 대상으로 공동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 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



가구간 공동개발(권장)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3조 (허용용도A)

- ① 허용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허용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 이외는 입지 할 수 없다.
- ☐ 허용용도 분류표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4	준 3~5BL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Lot) 준 5BL (4~5Lot)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중 창고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운동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2Lot) 준 4BL 준 5BL (2~4Lot)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중 창고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운동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5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중 창고 ·운동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A5	준 6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중 상점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6	상 1BL, 상 4~6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7	상 2~3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주거복합건축물
A8	상 7BL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허용도 우선 적용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불허용도C)

- ① 불허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불허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 할 수 없다.

□ 불허용도 분류표

도면번호	위 치	불허용도(B)
C1	전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 상기 불허용도 간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규제사항을 적용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내 건축불허용도 및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도축장, 화장장
-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가축시장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상대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 수집장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사행행위장, 경마장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무도학원, 무도장
- 담배자동판매기
- 복합유통, 제공업시설 중 일부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호텔, 여관, 여인숙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만화가게
-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 노래연습장업시설

주) 상대정화구역 내 허용하는 용도 중 도시계획조례 상 당해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인 경우는 불허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중 제외 업종]

-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가게, 게임제공업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업시설

주) 상대정화구역 내 허용하는 용도 중 도시계획조례 상 당해 용도지역 내 불허용도인 경우는 불허

제2절 권장사항

제15조 (권장용도B)

-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의 권장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

장한다.

- ② 권장용도의 면적산정은 지상부 연면적 중 순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면적 산정시 복도, 계단 등의 부속시설면적 및 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

□ 권장용도 분류표

도면번호	위 치	권장용도(C)
B1	주 1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B2	주 2BL~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제3장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6조 (건폐율)

- ① 건축물의 건폐율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를 준용한다.

- 건폐율 적용기준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80%	방화지구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80% 적용(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제4장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7조 (기준용적률)

- ① 기준용적률은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별, 획지별로 지정되는 용적률로서 특별한 용적률의 완화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18조 (허용용적률)

- ①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및 보행공간의 조성, 전면 공지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

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19조 (상한용적률)

- ①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대지(획지)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 및 완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20조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

- ①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비율은 순부담으로 산정한다.
- ②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 준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통과도로 및 가감속차로로 우선 조성하도록 하고, 여유 면적 발생 시 쌈지공원(소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단, 상7BL은 관통도로를 우선 개설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의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7BL 기반시설 부담계획 예시(안) >



- ③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기반시설은 '제19조 (상한용적률)'에 따른 완화 용적률 산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용적률은 다음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적용한다.

■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times 2/3$ 이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5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기준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5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 + 1.5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용적률 적용기준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 (순부담)	비 고
주 1BL~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준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 이상 (개설부담)	

주1) 공동1BL은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 준수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단, 지적분할로 인한 면적변경에 따른 비율변경 등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상한용적률 적용 가능

주2)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3)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준 1.2BL은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에만 적용)

- 일반상업지역(상2BL.상3BL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1,000%	
10%이상~20%미만	950%	
20%이상~30%미만	900%	
30%이상~40%미만	850%	
40%이상~50%미만	800%	
50%이상~60%미만	750%	
60%이상~70%미만	700%	
70%이상~80%미만	510%	

- 준주거지역(준1BL,준2BL해당 :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에만 적용가능)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500%	
10%이상~20%미만	480%	
20%이상~30%미만	460%	
30%이상~40%미만	440%	
40%이상~50%미만	420%	
50%이상~60%미만	400%	
60%이상~70%미만	380%	
70%이상~80%미만	330%	
80%이상~90%미만	300%	

제5장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21조 (높이제한의 적용대상)

- ① 최고 및 최저높이에 대한 규제대상은 당해 획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2조 (최고높이 규제)

-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획지의 경우 지정된 높이 및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용도별로 최고높이(층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 지정된 높이 및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높이는 위치별로 최고높이(층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고높이가 지정된 획지의 경우 지정된 높이 및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④ 최고높이 제한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주 1BL~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공동주택(아파트)	5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	-	4	
	준 5BL(4~5Lot)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	10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	-	10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준 3~5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	-	10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BL~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BL~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	-	13m~19m이하	

주1)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에 포함되는 획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최저 2층 이상

주2)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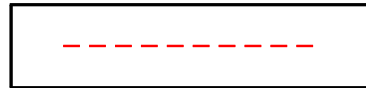
제6장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23조 (건축한계선)

- ① 폭 20m 이상 도로변, 공동주택용지 주변부, 원활한 보행 및 차량 통행이 필요한 곳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한다.
-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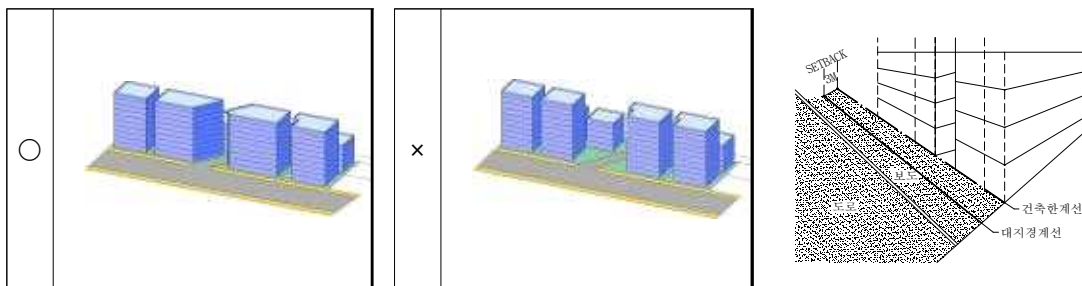
건축한계선
(적색점선)

제2절 권장사항

제24조 (건물의 배치 및 형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요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가급적 획지가 접하는 전면 가로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하며, 각각에 접한 획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건물의 배치(방향성) 예시도】



- ②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일률적인 동배치 및 건축물 형태를 지양하고 동배치 및 건축물 형태의 변화를 주어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하여야 한다.

제7장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25조 (간판)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해당 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제26조 (지붕 형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이하로 하되,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3.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27조 (건축물의 외관)

- ① (외벽면의 통일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 ② (개구부가 없는 외벽면 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다만, 건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조명,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미관 상 지장이 없도록 권장한다.
- ③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의 사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상업용(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층 전면 벽면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하고,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옥상구조물의 차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게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제28조 (건축물의 야간조명)

- ①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축 시 야간 경관조명(옥상, 창문이 없는 아파트 외복에 경관조명시설 등) 설치를 권장한다.
- ②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③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29조 (건축물의 색채)

-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 기조는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 사용을 권장한다.

제8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0조 (전면공지)

-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획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보도 및 차도를 설치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 ② 도면표시



전면공지
(연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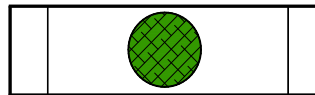
제31조 (공개공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개공지의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쌈지형 공지)

- ①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 조경부분과 공개공지를 쌈지형 공지로 조성할 수 있다.
- ② 쌈지형 공지의 최소규모는 1개소당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



쌈지형 공지
(연두색)

제2절 권장사항

제33조 (담장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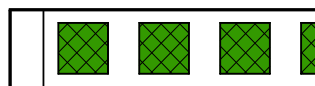
- ①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생울타리) 조성을 권장하며,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제9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4조 (공공보행통로)

- ①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② 공공보행통로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가구(Block)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대지내 보행통로)는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대지 경계선(건축선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1m이상 후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도면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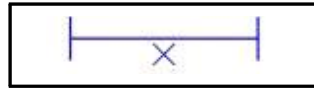
공공보행통로
(연두색)

제10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5조 (차량출입불허구간)

- 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획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건축물의 진.출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다.
- ②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청색)

제36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에서의 차량출입구의 설치)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로의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5m 이내의 구간에는 두지 아니하며 당해 획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제37조 (주차장 설치)

- ① 구역내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 확보대수 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조성하여야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경우 총 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장 기타

제38조 (생태면적률)

- ① 신규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부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 ①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4조를 따르며, 증축 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본 지침 변경 이후) 1회에 한한다.

③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39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0조 (일반도로)

-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불허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 ② 차선폭은 설계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공간은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며, 인접한 보도와의 높이차가 없어야 한다.
- ④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제41조 (보행자전용도로)

- ①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할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 포장은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 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③ 포장은 소형고압블럭에 의한 패턴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제42조 (버스정차대)

- ① 버스정차대 폭은 2~3m, 가속 및 감속구간을 5~10m씩 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1~2대를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정차대 이격거리는 대상구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 ③ 버스정차대는 보행집산이 이뤄지는 대기 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키오스크, 벤치겸용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 ④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20m 내외) 가로장치물 및 교목식재는 배제한다.
- ⑤ 버스정차대는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장소와 지하철역 등 타 교통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 ⑥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을 원칙으로 하되 버스의 운행이 적은 곳은 평지형 정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⑦ 버스정차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평지형 버스정차대	포켓형 버스정차대

제43조 (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②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④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m내외)내에는 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제44조 (횡단보도)

- ①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위치, 형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 ②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도로유형별 횡단보도 폭원 및 예시도】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 폭원	예시도
간선도로	10m ~ 12m	
집분산도로	6m ~ 10m	
지구내도로	4m ~ 6m	
기 타	2m	

제2절 포 장

제45조 (포장재료)

-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③ 각 가로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보도 및 소공원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④ 보차공존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제46조 (조성방식)

- ① 가로는 일반포장 구간과 특별포장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 ②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포장패턴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
- ③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패턴 및 질감)

- ①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 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④ 동일 보도구간 내 동일 포장패턴의 반복에 따른 경관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인접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에 부분적인 포장패턴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다.

제3절 가로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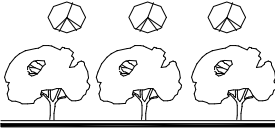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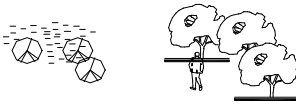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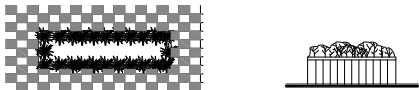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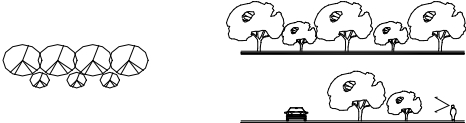
제48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2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 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 ②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 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버스정류장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가로수 식재방법)

- ①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②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③ 2열식재(건물앞 식재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 ⑤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을 조성한다.

[식재방법]

구 분	예 시 도
-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인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 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 밀식식재 - 주차장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	

제4절 가로 장치물

제50조 (설계기준)

- ① 가로 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 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기본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

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불허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 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제52조 (블라드)

-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와 보행도로가 만나는 경계부근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 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블라드를 설치한다.
- 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 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제5절 공원, 녹지 등

제53조 (공원 조성)

- ① 구역내 소공원은 지역주민 등의 휴게.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필요시 공원 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 ② 공원 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블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54조 (완충녹지 조성)

- ① 완충녹지는 가로수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② 특히, 완충녹지내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③ 가로변의 휴게소, 주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④ 가로변 완충녹지는 둔덕 조성을 통한 완충기능을 극대화하되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보도 등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각 시설용지내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55조 (공공공지 조성)

- ① 공공공지는 인접한 대지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며, 인접한 보도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보행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제56조 (광장 조성)

- ① 광장지역 내 포장지역은 최대한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광장에는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1.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구 분	완화 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 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권장)	기준용적률×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 및 완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공동 1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공원: 소래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소래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032-453-6292,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칭: 소래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A=4,61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공원녹지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10. 8.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610	4,610						
1	논현동	66-96	잡	3,375	3,375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2	논현동	66-97	잡	253	253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3	논현동	66-98	잡	680	680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4	논현동	66-105	잡	302	302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